



제 957 호

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2010- 7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규칙 제2010- 7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4
○ 규칙 제2010- 7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2
○ 규칙 제2010- 7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15
○ 규칙 제2010- 7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134
훈 령	
○ 훈령 제2010- 2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165
공 고	
○ 공고 제2010- 1673호	무주부동산 공고 185
○ 공고 제2010- 1676호	공영주차장 급지선정 및 유료화 공고 186
○ 공고 제2010- 1680호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187
○ 공고 제2010- 1681호	물품(남동사람들) 전자입찰 공고(긴급) 188
○ 공고 제2010- 168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3-1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92
○ 공고 제2010- 1685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97
○ 공고 제2010- 1686호	행정복사기 임차 입찰 공고(긴급) 198
○ 공고 제2010- 1690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2010년 11월 3회차) 202
○ 공고 제2010- 1693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안) 공고 209
○ 공고 제2010- 1694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217
○ 공고 제2010- 1696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249
○ 공고 제2010- 1699호	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250
○ 공고 제2010- 1705호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251
○ 공고 제2010- 17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립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252
고 시	
○ 고시 제2010- 81호	2011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55
○ 고시 제2010- 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257
○ 고시 제2010- 83호	2011년도 예산 고시 260
○ 고시 제2010- 84호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65
○ 고시 제2010- 85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270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0년 12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7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제59조제3항의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가 2010. 10. 25. 제18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 (제49조 및 제59조 제3항)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0년 12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7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제1항 규정”을 “제10조”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57세”를 “60세”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며, 전년도 1년의 성적을 종합하여 재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급 :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3관왕 이상 입상한 자

2. 1급 :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2관왕 이상인 자, 전국체육대회 1위에 입상한 자
3. 2급 :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2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2위에 입상한 자
4. 3급 : 전국규모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3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3위에 입상한 자
5. 4급 : 향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가능한 자질을 갖춘 자

④ 신규임용자의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수등급은 임용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다만, 올림픽 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및 전국체육대회 3관왕 이상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종”을 각각 “별표 8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종목별 선수의 최고성적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하되 제6조에 따라 면직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점수에서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⑦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 특별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감독, 선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 지급 기준

-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아래기준에 의거 봉급액 산정

구 분	봉급지급액 산정 방식
감 독	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코 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선 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합숙소관리자(조리사)	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

- 매년 1월 1일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지급액에 따라 결정

[별표 4]

운동수당 지급구분

구 분		운 동 수 당
감 독		매월 250,000원
코 치		매월 220,000원
선 수	특급	매월 2,000,000원
	1급	매월 1,000,000원
	2급	매월 500,000원
	3급	매월 300,000원
	4급	매월 80,000원

[별표 5]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구 분	목 욱 비	간 식 비	업무추진 교통비
감독·코치	50,000원	50,000원	100,000원
선 수	50,000원	50,000원	50,000원
합숙소관리자(조리사)		50,000원	50,000원

[별표 7]

입상보상금 지급구분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1위	2위	3위		
			감독		250,000	150,000	100,000		
			코치		200,000	100,000	70,000		
			선수	전국규모	개 인	300,000	200,000		100,000
					계 주	명×200,000	명×150,000		명×70,000
				전국체전	개 인	500,000	300,000		200,000
					계 주	명×300,000	명×200,000		명×100,000
				아시아규모		1,000,000	700,000		500,000
세계규모		3,000,000		2,000,000	1,000,000				
			기 록 구 분			지 급 액			
특 별 보상금		감독 코치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소속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1위			5,000,000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세계선수권대회 1위 · 전국체육대회 3관왕 이상			10,000,000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00,000			
기 록 갱 신 선 수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별표 8]

성과금지급 점수산정기준

구 분	1위	2위	3위	비 고
올 림 픽 게 임	1,000점	600점	400점	
세 계 선 수 권 대 회	600점	400점	300점	
아 시 안 게 임	400점	300점	200점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300점	200점	120점	
전 국 체 육 대 회	200점	120점	80점	
전 국 규 모 대 회	15점	10점	6점	

비고 :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해 당 전 국 규 모 대 회 명 칭
육 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우수선수 사기양양을 위한 운동수당 조정
- 향후 경기력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입상보상금 상향 조정
-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운동경기부 봉급표 조정 (별표 1)
- 특별승급 기준 삭제 (별표 3)
- 운동수당 지급구분 조정 (별표 4)
-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조정 (별표 5)
- 입상보상금 지급구분 조정 (별표 7)
- 성과금지급 점수산정기준 조정 (별표 8)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0년 12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7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분임경리관 및 경리관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1. 보건소, 관서 및 동

가. 일반공사(전문공사 포함)의 경우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2. 특별회계 및 기금

가. 일반공사(전문공사 포함)의 경우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계약조직을 통합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는 물론 민원 발생 억제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소, 관서 및 동의 계약사무 중 공사, 물품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무를 본청의 분임경리관 및 경리관이 행함. (제3조 제2항)
- 특별회계 및 기금의 계약사무 중 공사, 물품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무를 본청의 분임경리관 및 경리관이 행함. (제3조 제2항)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0년 12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7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부서의 장 :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 :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구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구세는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시분으로 구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조(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이 규칙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및 내역은 항상 출력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서류의 송달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접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송달부 등의 관리) 제6조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4.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제9조(대장 및 그 밖에 서류의 정리) 구세징수에 관한 대장, 계산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절 부과·징수

제10조(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구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구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구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구금고의 수납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번호 :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2. 회계연도·구분 : 제4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3. 회계·과목 : 별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주소

가. 개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기재한다.

나. 법인 또는 사업자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다.

6. 과세대상 : 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대상을 토지면적·건축물면적·차량등록번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납부기한 : 고지분의 경우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로 부과하는 구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기 전 징수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세목 : 법 제7조에 따른 세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줄여서 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9. 세액 : 세액란에 맞추어 기재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세액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연도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 또는 세목에 대한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납세고지서의 재발급)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의 훼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신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재발급 납세고지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부납부, 분납 등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발행의 경우에는 고지서 여백의 각 쪽마다 고무인 등으로 “일부납부” 또는 “분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납부 구세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고서
2. 법인장부·검인계약서·증여 등 무상취득계약서·사용승인서·판결문
·경락관련서류 또는 소득세납부 영수증 등 세액계산 관련 증빙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구세 모사전송·우편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여 수납기관에 해당 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신고 및 납부구세 모사전송·우편접수대장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구세의 수납) ① 구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징수관의 명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부터 별지 제43호 서식까지에 따른 현금영수증서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등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부터 별지 제22호 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구세 수납내역의 확인점검)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의 부과·신고 및 납부내역과 구금고 수납내역의 자료를 상호대사하여 점검하고 불일치시에 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구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OCR 미소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영수필통지서의 불명자료, 미도착자료 등에 대하여는 은행조회 등으로 신속히 확인하여 구세를 납부한 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제13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지방세관계법·조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액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액 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징수촉탁 등)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 및 징수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수촉(수)탁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전입·전출사항 등에 따른 소재 확인
2. 등기(등록)부, 재산세과세대장 및 관허대장 등 관계공부에 따른 소재 또는 재산의 확인

② 부과철회한 후 재부과결정을 한 경우 다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를 할 수 없으며, 부과철회 후 다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를 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한 경우 연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세입마감) ① 제10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는 해당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의 마감은 해당 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거나 그 출납을 폐쇄함으로써 세입을 확정한다.

제26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4월 1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 및 제13호 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구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결정한 구세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을 이월함과 동시에 해당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구세환급금

제27조(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지방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를 지방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감액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다른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재산상속일 경우에는 재산의 등기부등본·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지방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방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64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다방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년도의 지방세환급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같은 연도 내의 지방세환급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상의 미수납액 및 지방세환급금액에서 충당할 금액을 감하고 수납부·징수부 및 세입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충당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구세환급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그 구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구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3개월 이상 상장된 상장주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 따라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납세자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협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한다.

④ 납세담보는 다음 각 호 중에서 납세자의 편의별로 선별하여 정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4. 토지
5.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
- ⑤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정리부(법 제8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정리부)를 작성·정리하고, 징수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등”이라 한다)의 재조사를 하여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소재지 등의 재조사를 하였으나 소재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부과철회를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를 한 후에 년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 법 제85조제1호에 따른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납세담보로써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거나 환가금액을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지방세충당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 그 밖에 유가증권,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
- ③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환가금액이 징수할 구세에 충당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8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납세담보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대하여 매월 1회 보관 및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시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담보의 보완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36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조례 제28조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체납처분 절차

제37조(자격증명서의 제시 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휴대하고 영 제105조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
2. 압류조서
3. 수색조서
4. 봉인용지
5. 보관증 용지

제38조(수색)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재산압류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다만, 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채권
4.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② 질권이 설정된 동산(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포함한다)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는 그 압류조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41조(압류물건의 보관) 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압류재산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 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갑, 을)에 따른다.

제3절 압류

제43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 전에 체납된 구세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보관·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함에도 질권자가 해당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라 질물의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물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45조(압류통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자·채무자·채권자·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3호 서식(갑, 을)
2.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 서식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 서식
4.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 서식
5.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5호 서식(갑, 을)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급청구권의 지방세환급금 그 밖의 반환금은 관계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일전까지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을 하는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등록촉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등기·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① 세무공무원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인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제49조(부동산의 분할·합병·변경의 등기촉탁) ①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39호 서식 및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① 자동차·건설기계·부동산·공장재단·광업

재단·선박·항공기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구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구세우선권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1조(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 체납자의 압류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 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②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 촉탁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관할 관서에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절 압류의 해제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3자에게 보관을 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가 직접 재산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및 별지 제43호 서식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57조(교부청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에 대하여 구세채납액의 교부를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직접수령 후 납입하거나 계좌입금방식에 따라 수입금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배당금을 수령한 담당공무원은 즉시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후에 배당금 지급처의 배분착오 등으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금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하고 체납액정리부·수납소인정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당받거나 총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받거나 총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지방세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58조(참가압류) ①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구세총액이 압류재산의 예상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인 체납구세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구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한 후의 배당가능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절 매각

제59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명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공매광고) ① 공매광고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라 관보·구보·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구 본청·동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공매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면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실황을, 자동차 공매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보를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공매공고의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의해 공매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와 함께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1조(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라 채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그 밖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매각예정가격조서) ①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②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에서 평가한 가액을 매각예정가격 결정에 참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평가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매할 물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 공매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따라 산정하되 토지에 정착된 수목·농작물 그 밖에 천연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도 포함한다.

⑥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은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응) ① 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무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등록 국채 또는 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입찰)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0호 서식의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개찰) ①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별지 제51호 서식의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67조(경매) ①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공매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매방법으로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매인에게 경매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제2항의 경매조서에 해당 경매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경매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매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공매물 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56호 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압류기관의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 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 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

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58호 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별지 제55호 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별지 제61호 서식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매각년월일·신구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59호 서식에 따라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그 밖에 무체재산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73조(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하면 즉시 재산의 표시·공매년월일·공매가격·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60호 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따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귀속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청산

제75조(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76조(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체납금액의 기재는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 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원”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을 분할촉탁한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77조(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취인이 대리인·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공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3호 서식,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다.

제8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매대행의뢰서 (별지 제64호 서식)
2.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3. 그 밖에 참고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구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구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지 제65조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79조에 따라 정당하게 구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구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구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구매대행통지서를 채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매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구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구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구매대행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구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채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채납처분을 유예(구매처분유보 포함)한 경우
4.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채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채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채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 ② 채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채납세액을 징수할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채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매공고 : 공매공고를 한 때
 2. 공매중지 : 공매를 중지한 때
 3. 매각결정 :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한 때
 4. 매각결정취소 :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 공매대금을 수령한 때
-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공매대금의 인수·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장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만한다)
2. 계약보증금
3. 공매대행금
4. 그 밖에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 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구매대금을 조례 제38조에 따라 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구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구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분계산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배분순위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76조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그 밖에 경상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금 배분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배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구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구매대행 수수료 등 구매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세출예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협의사항 등) 세무공무원은 구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구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8조(회생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같은 기간 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9절 결손처분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 또는 읍·면·동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추적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따른 조사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따른 조사
3. 주식이동상황에 따른 주주조사
4. 취학아동·병적 및 민방위 관계에 따른 추적조사
5.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0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및 결손처분 취소 또는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다.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3. 사업장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장 수색조사

나. 사업장 잔여재산조사

다.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조사

라.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거래보증금 등에 대한 조사

4.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양도·양수했는지 여부

나. 양도담보 재산유무

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탐문조사

5. 그 밖에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결산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거래실적이 있는 금융회사 점포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1조(결손처분의 결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69호 서식의 결손처분표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2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93조(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체납처분 담당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행위
2.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행위
3.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제9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시기·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갖추어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0호 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시장 의견조회) ①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세 관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지방세 관계법령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구청장의 의견

제98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3호 서식 및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과세표준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별표]

구세 회계과목 코드 (제12조 관련)

표준세목코드	세목명	대표세목명	비고
103000	면허세		
103001	면허세(일반)	면허세	
103002	면허세(차량)		
104000	주민세		
104009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105000	재산세		
105001	(2011이전)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05002	(2011이전)재산세(선박)		
105003	(2011이전)재산세(항공기)	재산세	
105004	(2011이전)재산세(토지)		
105005	(2011이전)재산세(주택)		
105099	(2011이전)재산세(기타)		
105301	재산세(건축물)		
105302	재산세(선박)	재산세	'11세목코드 추가
105303	재산세(항공기)		
105304	재산세(토지)		
105305	재산세(주택)		
105399	재산세(기타)		
111000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114000	등록면허세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	'11세목코드 추가
114002	등록면허세(등록)		
132001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	
132002	사업소세(종업원할)		
140000	지방소득세		
1400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별지 제1호 서식

통상우편 송달부

[illegible]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송달부(직접교부)

[illegible]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illegible]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기분 ○○세 (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 송 달			공시 송달 일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

☐ 징수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 액 통 지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 입 년 도		년 도 세입	
			결 정 내 용	본 세	가 산 금	계
	항 목		세 액			
			가 산 세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				
납 세 인 원		구 동 외 번지명				
적 용	년 도 월 분 세				수납부 등 재	(인)
					환급금 정 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illegible]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호 서식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호 서식

세입(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발의일 :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결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구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0호 서식

우편 · 모사전송 · 전자문서 신고접수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1호 서식

OCR 미소인 처리 내역

(수납일자 : ~)

세 목 미소인사유	연도	월	동	과세번호 수납기관	기분	파일일련번호 OCR판독마감일	수납일 소인일	납기	본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방위세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수납금액	납세의무자	처리결과

※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2호 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illegible]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3호 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bigcirc \bigcirc \frac{5}{10})$ [illegible]

■ 별지 제14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의
의
의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최소(경정) 내역

[illegible]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구세 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5호 서식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6호 서식

(앞 면)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세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체납자 주소지 약도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6호 서식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u>주 거 확 인</u>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u>재 산 확 인</u>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극빈자 확인</u>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u>재조사 확인</u>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7호 서식

징수촉(수)탁 정리부

결재			촉탁(수탁)	수탁(촉탁)	체납세							납세의무자		결과	완결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연월일	기관	년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본세	가산금	계	주소	성명		

- (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7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7호 서식 부표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8호 서식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 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 재			지급필통지사 항				
	년도 / 기 분	책호 /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조 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구좌 경정	명령 번호	지 급 명령액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일 자	수 령 자	대조 자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구 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 당 액	구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 송 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및통지액 ④	차인미지급액 ③ - ④	결 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 당	과 장
당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9호 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년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00세	00세	00세	00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0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담 당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 입 과 목				환급금 총 액	과오납 연월일	환 급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총당액	납 세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환급금 지급대상자 통보서

지방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illegible]

$\frac{11}{E}$.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2호 서식

징수유예 등 정리부									
신청일자		결정통지		취소일자		완납일자			
징수유예 등의 종류		1. 고지유예 2. 분할고지 3. 징수유예 4. 체납액의 징수유예 5. 체납처분등의 유예							
납세의무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징수유예 내 용	당초 부과 내용				징수유예내용			납부일자	
	년도기분	납부기한	세 목	세 액	유예기한	세 목	유예금액	금액	납부 일자
담보물	제공물건	물건 소재지			가 액	수 량	제공일자	반환일자	환가 총당 일자
적 요	유예사유								
	취소사유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3호 서식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정리부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4호 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납세담보	담보물건			
	소 재 지			
	소 유 자		전화번호	
	담보금액			
	담보제공일자			

[illegible]

위와 같이 본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건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의
하
고

납세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5호 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세 총당 통지

지방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담보		담보물건									
		소 재 지									
		소 유 자									
		담보금액									
		담보제공일자									
총 당 내 역	연도/ 기분 (월)	세 목							납 세 의 무 자		
		과세 번호	계	00세	00세	00세	00세	가산금	주 소	성 명	
	총당후 (미수납액) (총당잔액)							금 원			
	총당일자		년 월 일		총당잔액 처리내역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6호 서식

납세담보 관리대장

일련번호														
담보물건 제공자			담 보 물 건					관 련 시 세			사후처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종류	금액	소재지	소유자	제공일자	세목	금액	연도 / 기분	납세의무자	해제	총당	년월일

	점검 일자	점검자	점검내용	결 재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내용	결 재		
				담당자	담당	과 장				담당자	담당	과 장
사후 관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7호 서식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연도	납부기한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계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소 또는 거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8호 서식

체납자 재산압류 대장

[illegible]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9호 서식

압류재산 보관증

압 류 물 건	수 량	비 고

위에 열거한 지방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보관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		주민등록번호	

※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0호 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성명

년 월 일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0mm×70mm(특급용지 100g/㎡)

■ 별지 제31호 서식(갑)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천연과실 인도요구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시(도) ○○구(시·군) ○○동(리) 번지
호 소재 ○○재산에서 압류 후 발생한 천연과실 ○○을 년 월 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 ○○과 세무공무원 ○○○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1호 서식(을)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법정과실 인도요구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시(도) ○○구(시·군) ○○동(리) 번지 소재 ○○재산(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열거)에서 압류 후 발생한 법정과실 ○ ○ ○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과 세무공무원 ○○○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통지서를 받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은 무효가 되고, 귀하가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2호 서식

질물인도 요구서						
질 권 자	성명					
	주소					
체 납 자	성명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인도연월일						
인도재산의 표시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질권자) 귀하						
[참고]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을 압류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3호 서식(갑)

채권압류통지서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채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위와 같이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관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3호 서식(을)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자 (채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4호 서식

재산압류통지서							
성 명							
주 소							
채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위와 같이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5호 서식(갑)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 표시							
가압류(가처분)	성 명						
당시의 소유자	주 소						
가압류채권자	성 명						
(가처분신청인)	주 소						
가압류(가처분)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끝.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5호 서식(을)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끝.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6호 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등기(등록)권리자		○○ 시·도 (처분청 : ○○ 시장·군수·구청장)			
등기(등록)의무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 과 세 (「 지 방 세 법 」 제 26 조 에 의 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등기촉탁서부분 및 압류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 사	
		기입		대 조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7호 서식

문 서 번 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말소)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사용의 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권리(의무)자					
등록의무(권리)자	성명	○○ 시·도 (처분청 : ○○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변경)			
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 말소)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관할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촉탁서부분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 사	
		기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8호 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인도하여야할재산의표시				
인도기일		년 월 일 까지		
인도장소				
인도를명하는이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9호 서식

문 서 번 호		부동산 · 공장재단 · 광업재단 분할(구분 · 합병 · 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 표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 · 합병 · 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 · 합병 · 변경)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지방세체납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성명			
첨 부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면(건물)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3. 압류조서등본 통 4. 촉탁서 부분 통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접수 제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 조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0호 서식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지방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압류조서등본 통 2. 촉탁서 부분 통		토지대장 등본 1부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1호 서식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통 반)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사 용 또 는 수 익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표시						
사용 또는 수익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시 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2호 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무 체 재 산 권 의 표 시					
등기(등록)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등 록 면 허 세	비 과 세 (「 지 방 세 법 」 제 26 조 에 의 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성 명: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촉탁서부분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 사	
		기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3호 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등기(등록)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 록 번 호		
	주소				
등기(등록)의무자	oo 시·도 (처분청 : oo 시장·군수·구청장)				
등 록 면 허 세	비 과 세 (「지 방 세 법」 제 26 조 에 의 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성 명: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촉탁서부분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 사	
		기입		대 조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4호 서식

교 부 청 구 서						
문 서 번 호				사 건 번 호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교 부 청 구 금 액		금 원 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세목	지방세			비고
			본세	가산금	합계	
배당액입금 의 회 계 좌	개설은행			예 · 적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 금 명 의 인		
1.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귀하						
※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5호 서식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					
번 호	체 납 자		공매재산 의 표 시	견적가격	산출근거
	주 소	성 명			

(주) 산출근거 평가상 참고할 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6호 서식

(앞 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호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압류재산 표시

관리 번호	재산의 명칭	소재지	용도 (품질)	종별	수량	매각 예정가격	기타

2. 일괄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공매회차	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매각일시	공고기간
1			
2			
3			
4			
5			
6			

3. 공매장소 :

4. 입찰 결과발표 :

5. 공매 입찰 방법 :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다음 사항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 ①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 ② 최고액 입찰자는 입찰결과 발표 3일 이내 본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③ 입찰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입찰하여 최고액 입찰자로 선정될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④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같은 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매수 제한자가 아닐 것
- ⑤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일 것

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최고가 입찰자선정(단독입찰 가능)

7. 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 ①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매수대금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②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액 2,000만원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낙찰가액 2,000만원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입찰보증금을 구청에 귀속 조치 함

9.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10. 공매의 중지

-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해야 함

11. 기타사항

- ①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기준임
- ② 공매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해야 함
- ③ 매각물건중 농지(전·답·과수원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
- ④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사전에 직접 조사
- ⑤ 본 공고문상의 내용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함
- ⑥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시, 구·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7호 서식

문 서 번 호		공매통지서					
성 명							
주 소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공 매 재 산 의 표 시							
공 매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공 매 장 소		공매방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 · 경매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회 차	입찰일시(기간)			매각예정가격			
	기 일 입 찰		기 간 입 찰				
1 회차							
2 회차							
3 회차							
4 회차							
5 회차							
6 회차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체납세액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 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8호 서식

평 가 감 정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아래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주소 :

성명 :

(인)

번 호	재산의 표시	평가금액	적 요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9호 서식

질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5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응하고자 질권을 설정하는바 본인 (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되어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0호 서식

입찰서

[illegible]

위와 같이 체납처분 공매공고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붙여 입찰합니다.

이
의
의

입찰자 주 소 :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1호 서식

입찰조서

(제 회)

납 세 자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시장 군수 구청 장	세무 과장	재산명칭 또는 번호	매각예정 가격	입찰가격	입찰자 성명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낙찰대금 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인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2.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매공고에 계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2호 서식

경매조서

채납자 에 대한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에서
경매에 붙인바 아래와 같음.

번 호	공 매 자 산 품 목	최 고 경 매 신 청 가 격	적 요	경 락 인 주 소 성 명	체 납 자 주 소 성 명
1	○ ○	원	경 낙		
2			견적가격에 미달		
3		원	경낙최고신청자 2인이 상인 고로 추천으로 결정		
4					
5					
6					
7					
8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 성 명 : (인)

경 매 인 성 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3호 서식

입 찰 규 정 (표 지)

제1조 입찰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봉합하고 입찰보증금을 붙여 개찰 시각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지방채로서 보증금을 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의 질권설정서와 지방채등록부의 등록완료통지서를 붙여야 한다.

제3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충당한다.

제4조 낙찰자에게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의 여백에 입찰자의 영수인을 받고 즉석에서 환급하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물건중 1개번호 내지 수개번호를 선발하여 입찰함은 무방하나 1개번호내의 기부를 분리하여 입찰할 수 없다.

제6조 개찰은 게시한 장소, 일자에 입찰인 면전에서 한다. 다만, 입찰인 또는 대리인이 개찰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회없이 개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회하지 않음을 이유로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7조 대리인으로서 입찰 또는 개찰에 입회시킬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4호 서식

경매 규정 (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1조 공매인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조 경매는 그 사건을 고지하고 각 경매물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최고하는 때 시작하여 최고경매의 신청자에게 대하여 경락을 선언함으로써 종료한다.

제3조 경락은 최고가격 경매의 신청을 3회 이상하여도 그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이를 경정한다. 동일 최고경매 신청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최초의 신청자를 경락자로 하고 신청이 동시일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서 이를 정한다. 다만, 경매가격이 견적가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신청은 무효로 하고 매각을 중지한다.

제4조 사정에 의하여 공매물건의 매각을 중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5호 서식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금 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 월 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6호 서식

납 입 서

일금

원정

내 역

- | | | |
|---------|-----|---|
| 1. 공매물건 | , 금 | 원 |
| 2. 공매물건 | , 금 | 원 |

위의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체납자(성명기재)의 경매물건 매수자 성명 : (인)

체납자(성명기재)의 공매물건 경매인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7호 서식

문 서 번 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공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 기 권 리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 기 의 무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과 세 표 준		부동산 가격 금 원정			
등 록 세		금 원정(분의)			
oo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성 명					
부 속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 기 청 구 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8호 서식

등 기 청 구 서						처리기간	
						1 일	
등기청 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통 반)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통 반)					
재산의 표시							
매각결정 연월일		년 월 일					
대금납부 연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금 원정					
취 득 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 : 취득세 금 원정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9호 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광업권이전등록 촉탁

아래와 같이 광업권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구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등 록 원 인 과 그 일 자	년 월 일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결정
등 록 목 록	광업권이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금 원
첨 부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0호 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 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인	주 소	
	성 명	
계 약 일 자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일 자		
공 매 일 자		
공 매 가 격		
공매에 의한 매수인	주 소	
	성 명	
귀속재산 매수대금 부분 잔액금 원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1호 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거 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 각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 소 또 는 거 소			채 권 금 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금 액	교 부 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2호 서식

영 수 증

시·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직

성명

귀하

일금

원정

지방세체납처분 잔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주소:

성

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3호 서식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분 금 액		금 원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구비서류: 배분계산서등본 통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4호 서식

☐ 공 매 대행의뢰서 ☐ 수익계약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거 소 (본 점)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종 목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5호 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한 재산의 내용								
소재지				종 류				
수 량				품 질				
압류연월일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계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6호 서식

공매대행통지서				
성 명				
상 호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공매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 재 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7호 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공매참가제한 대상자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8호 서식

공매대행 중지 요구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2. 공매중지 대상재산

재산소재지	종류	품질	수량	비고

3. 관련 체납액

4. 공매 중지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공매대행의 중지를 요구하오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9호 서식(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 장	국 장						
				년 월 일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 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9호 서식(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9호 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70호 서식

의안번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또는 주소						
	상호						
통지기관							
청구대상	과세대상 물건						
	통지사유 및 근거						
	세액		과세표준		세목		
청구경위	통지 받은 날			청구취지			
	청구서 접수일						
	보정요구일			보정이행일			
	처리기한			1차연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서(안)							
위 청구(법)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어 결정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1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결정서

의안번호	청구인	세목	세액	처분청	심사결정	
					요구의견	의결
년 월 일		위 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2호 서식

심 사 결 과 통 보 서

의안번호	청구인	처분청	요구안	결정

()호로 심사요구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건이 위와 같이 심사의결 되었기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3호 서식

의안번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처분청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세		과		세		
	고지일자		목		표		액		
이의 신청 경위	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날				보정요구일				
	이의신청일				보정이행일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정이유		별첨		
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4호 서식

의안번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처분청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세목		과세표준		세액		
	고지일자								
이의 신청 (과세 전적부 심사) 결정 경위	처분통지를 받은날		보정요구일			보정이행일			
	시·군·구세	이의신청일		결정서수령일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일		결정서수령일					
	결정구분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결정(안)		(결정안 별첨)			심사청구일				
위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5호 서식

지방세 과표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결과		
기타의견 (소수의견)						
참석위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과 - (. .)호로 심의 요청한 지방세 과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등 (제1조부터 제9조)
- 지방세의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및 재발급, 지방세의 수납, 부과취소 및 변경 등 (제10조부터 제26조)
- 지방세환급금 처리 등 (제27조부터 제31조)
-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제32조부터 제35조)
-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36조부터 제88조)
-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제89조부터 제94조)
-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제95조부터 제99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0년 12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7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① 부과부서의 장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다른 시·도(다른 자치구를 포함한다) 관할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계되는 총 채권금액과 처음으로 설정한 저당권 등기·등록원부 등 관계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 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대장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 발급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 발급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거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9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120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15호 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재산세 분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세(재산분)

제1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 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동)

접수 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 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m²)

■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부동산, 기타 - 년 월)

고지번호	납부구분	신고일	물건종류	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적용세율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등기등록일					가산세	가산세		
	비과세세액	물건의 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기·등록사유/건수	비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 년도 월

(○○동)

처리 번호	처리일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등기등록일	물건의 소재지	관련법령	비과세 사 유	비과세		결 재		
		주소	전화번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지 방 교육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호 서식

등록면허세(등록) 종과세내역서

고지번호	납부구분	신 고 일	납기일	물건종류	과세표준	결정과표	적용세율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 육세가 산세	종과해당 일
		등기등록일										종과해당 사항
물건의 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면허세 합계		
등기·등록 원인			전 화 번 호		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

(○○동)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면허명칭	종·호	면허일	세 액	납부일	결 재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호 서식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동)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면허명칭	면허일	종·호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납 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사항	면허일자	면허명칭	면허 종·호	면허기관	적 요			
체납내역	년도	기분(월)	체 납 액			납기	독촉 일자	비 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금	합 계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〇〇동)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명칭	면허일	종·호	근거법령	비과세 사 유	비과세 세액	결 재		
	처리일자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 별지 제10호 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태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1호 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2호 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3호 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단도 양면

(읍 · 면 · 동)

[illegible]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4호 서식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 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재산의 종류	재산의 소재지	지적,면적, 토수 등록번호	공시 지가	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	폐지 사유	지목 구조	사용자	
							주소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5호 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m²)

담당자	담당	과장

신 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 산세부과내역						물납 신청내역					물납 허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 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당초 납부 세액	신청세액	종류	소재지	면적		물납부동산 평가가액	통지일	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	등기일 (물납일)
		주소지	과세 대상									토지	건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6호 서식

담당자	담당	과장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illegible]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7호 서식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

담당자	담당	과장

연번	물건소재지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신고사항		직권지정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8호 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9호 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0호 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1호 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전문화·체계화된 3개의 법으로 분법되고, 지방세 세목체계가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의 부과·징수 절차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비과세 관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등을 규정 (제2조부터 제12조)
- 재산세의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 관리, 물납 및 분납, 납세관리인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 (제13조부터 제16조)
-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및 과세대장 정리에 대하여 규정 (제17조부터 제22조)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0년 12월 31일

남동구 훈령 제2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본청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리체제

제4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건설과장이 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2. 소관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그 밖에 소관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6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명·교체) ① 구청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후임 분임보안담당관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청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부서는 소관 공간정보를 별표 1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 공간정보 업무담당 부서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 공간정보 업무담당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 취급자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취급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는 소관 공간정보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로 외부인 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 및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공간정보 업무담당 부서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목적으로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경우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하여야 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복사·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관 공간정보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담당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소관 공간정보 업무담당 부서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구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안지도·감사·조사 및 교육

제21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감사) ① 구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계획,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교육)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관 공간정보 업무담당 부서장은 공간정보 업무담당자가 신규채용 · 전입 · 전출 및 퇴직하였을 때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 · 유출 · 침해 · 훼손 · 분실
2. 법 제30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 · 훼손 · 불법이용
3. 법 제31조의 비밀준수 등의 의무 위반행위
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준용)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한다.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4.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5. 매연도 보안업무수행지침
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규정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공간정보의 분류기준(제10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네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네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수치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네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기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 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그 밖의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분임보안담당관은 전 3항의 상황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
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
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분임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
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
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
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
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 (1) 상황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2) 지출장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취급자 관리대장(제11조 관련)

소 속	성 명	직 급	주민등록번호	취급일	취급구분	취급자료	비고

- ※ 1. 취급일 란에는 취급을 시작한 연월일 기재
 2. 취급구분 란에는 비공개, 공개제한 등으로 기재
 3. 비고란에는 취급 해제 연월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제12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태	수량(건)	보호기간	보관장소	비고

-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제12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생산년도	공간정보목록	자료구분	자료형태 및 수량	보관장소	비고

-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⑥ 공간정보의 종류		⑦ 신청지역	
⑧ 사용용도		⑨ 제공방법과 수량	- 종이출력 () 축척 : 매수 : 축척 : 매수 : - 전산매체 ()
⑩ 비고			

※ 작성요령

⑥ 공간정보의 종류 : 도시기반시설물도, 수치지도

⑦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⑧ 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⑨ 제 공 방 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

요 청 자 신원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타 당 성		
				검 토 자	
요청자료	보안대책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년 월 일
 분임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제13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신원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
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즉시 환수 및 사용금지

신청인 _____ 성명 _____ (서명)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 · 출력대장(제15조 관련)

일자	제 목	자료구분	건수 (매 수)	출력자 (복제자)	사유	열람 · 수령자		예 고 문	승 인 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으로 기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 우리구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명칭 변경 (제명 등)
- 규정 적용 기관 조정 (제2조)
-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안 제17조)
-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변경 (별표 1)
- 관리대장 서식 일부 변경 (별지 제1호 서식 등)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7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 12.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12.30 ~ 2011.06.30 (6개월간)
2. 신고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032-466-3811, 032-453-2270)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12	종교용지	132.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9-3	도로	1,941.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32-12	도로	743.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0-1	도로	2,990.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5	대	31.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52-17	임야	539.0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21-7	도로	1,073.0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13	전	334.0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14	임야	332.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23	전	24.0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24	전	119.0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61-1	도로	360.0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14-1	임야	105.0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14-5	임야	44.0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40-2	임야	1,079.0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41-1	묘지	119.0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2	하천	290.0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86-1	도로	308.0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73-3	임야	225.0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53-7	임야	3,038.0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66-2	도로	2,882.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76호

공영주차장 급지선정 및 유료화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공구상가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유료화에 따른 급지 및 운영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시행일 : 2011. 1. 1.

2. 급지 및 운영사업자

구 분	주 차 장 명	면 수	급 지	운 영 사 업 자
노상	남동공단공구상가	338	3급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3. 주차요금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노상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80호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구제역방역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9호) [별표3] 5.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출입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10. 12.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치목적 :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에 따른 전염병 확산 방지
2. 이동제한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4번지 2호
3. 대상가축 : 대상 농장 사육중인 우제류 전두수
4. 사육두수 : 소 78두, 돼지 50두
5. 이동제한 기간 : 2010년 12월 31일까지
6. 기타
 - 사육중인 우제류에 대한 예찰 강화, 출입자 통제 및 축사 소독 철저
 - 본 이동제한 명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81호

물품(남동사람들)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2011년도 남동사람들(반상회보) 제작 발간
 나. 세 부 내 역 : 과업지시서 참조

품 명	규격 및 수량	납품장소	납품기한
2011년 남동사람들	o 규격 : 4절 신문용지 4면 o 면수 : 4절 4면 (8절 8면) o 색도 : 8절 2면 - 원색 / 8절 6면 - 2도 o 총수량 : 150,000부 × 12회=1,800,000부	총무과 지정장소	매회 원고수령일로부터 24일 이내 (매월, 년12회 발행)

- 다.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11. 12. 31
 라. 기 초 금 액 : 총액126,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가. 입찰개시일시 : 2010. 12. 28 (화) 13:00
 나. 입찰마감일시 : 2011. 01. 03 (월) 13:00
 다. 개 찰 일 시 : 2011. 01. 03 (월) 14:00
 라. 개 찰 장 소 : 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자로서
-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
 - ②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한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소식지 발행 실적이 있으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2009.11.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의 직접생산확인**에 등재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개찰일(01.03) 10:00**까지 위의 입찰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남동구청 경영재정과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032-453-2269)로 전송하여야 하며 팩스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032-453-2266)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5. 입찰방법

가. 연간예정수량을 대비한 총액입찰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계약이행 능력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1호, 2009.11.20)」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4.995%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이용하여 심사를 하며, 다만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심사신청서를 받아 심사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규등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다. 개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계약체결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우리구에서 송신한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032-453-2235 홍순용)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경영재정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8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3-1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8호(2006. 6. 5)로 시설결정 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2) 및 도시개발과(☎032-453-29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구간 내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 남동구 수산동 28-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시설의 종류			사 업 명
구 분	노선 번호	규 모	
도 로	경신지구 소로 3-1호선	폭원(B)= 6m, 연장(L)=474m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로633(만수동 1008번지)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있음)

• 당 초 : 2009. 3. 27 ~ 2010. 12. 31

• 변 경 : 2009. 3. 27 ~ 2011. 6. 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용지 조서(변경 있음) : 붙임 용지 조서 참조

(2) 지장물 조서(변경 없음) : 붙임 지장물 조서 참조

6.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편 입 용 지 조 서

고시 일련 번호	구분	동명	지 번	지목	공 부	편입면적(㎡)	잔 여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변경없음	수산동	38-1	답	1	1	-		남동구
2	변경없음	"	28-17	도	89	89	-		남동구
3	변경없음	"	597-21	도	38,237	897	37,340		국(건설교통부)
4	변경없음	"	28-16	도	215	215	-		남동구
5	변경없음	"	28-15	도	264	264	-		남동구
6	변경없음	"	28-29	도	144	144	-		남동구
7	변경없음	"	54-1	도	3	3	-		윤두섭
8	변경없음	"	37-1	도	2	2	-		남동구
9	변경없음	"	51-4	도	13	13	-		남동구
10	변경없음	"	50-8	도	295	295	-		남동구
11	변경없음	"	54-8	전	1	1	-		남동구
12	변경없음	"	54-7	도	16	16	-		윤두섭
13	변경없음	"	54-4	도	33	33	-		남동구
14	변경없음	"	55-4	도	2	2	-		남동구
15	변경없음	"	50-10	대	20	20	-		남동구
16	변경없음	"	67-29	도	32	32	-		남동구
17	변경없음	"	67-30	도	38	38	-		남동구
18	변경없음	"	68-3	도	9	9	-		남동구
19	변경없음	"	50-13	대	22	22	-		장석환

20	변경없음	"	50-7	도	20	20	-		장석환
21	변경없음	"	45-21	대	6	6	-		남동구
22	변경없음	"	45-20	도	15	15	-		남동구
23	변경없음	"	67-28	도	1	1	-		남동구
24	변경없음	"	49-5	전	1	1	-		남동구
25	변경없음	"	49-8	도	72	72	-		남동구
26	변경없음	"	67-31	도	18	18	-		남동구
27	변경없음	"	67-2	도	20	20	-		남동구
28	변경없음	"	67-26	도	100	100	-		남동구
29	변경없음	"	67-27	도	39	39	-		남동구
30	변경없음	"	48-5	도	7	4	3		국(건설교통부)
31	변경없음	"	69-2	도	13	13	-		국(건설교통부)
32	변경없음	"	70-4	도	76	76	-		남동구
33	변경없음	"	70-5	전	14	14	-		남동구
34	변경없음	"	72-5	도	40	40	-		남동구
35	변경없음	"	72-11	전	144	144	-		남동구
36	변경없음	"	72-10	전	334	334	-		남동구
37	변경없음	"	67-32	도	8	8	-		남동구
38	변경없음	"	67-33	대	5	5	-		박남식
39	변경없음	"	68-4	대	4	4	-		김옥행
40	신규(편입)	"	38-2	답	26	26	-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69	이의영

지 장 물 조 서

조서 번호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소 유 자(추정)		관 계 인(추정)			비고
		동 명	지 번				주 소	소유자	주소(상호)	성 명	권리내용	
1	변경없음	수산동	28-7									
2	변경없음	수산동	28-16									
3	변경없음	수산동	28-15									
4	변경없음	수산동	28-1									
5	변경없음	수산동	28-29									
6	변경없음	수산동	50-6									
9	변경없음	수산동	67-28									
10	변경없음	수산동	67-1									
11	변경없음	수산동	67-26									
12	변경없음	수산동	70-5									
13	변경없음	수산동	68-4	담 장	적벽돌 담장 L=4.5m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69번지	김옥행	남동농협조합	구월남동지점	근저당	
				매실나무	3주	수령 2년 이상						
14	변경없음	수산동	67-33	담 장	적벽돌 담장 L=3.2m		인천. 남동구 수산동 67-24번지	박남식				
				대 문	STS식 대문 1식							
15	변경없음	수산동	67-32	전력계량기	전력계량기 1식		인천. 남동구 수산동 67-24번지	박남식				
				담 장	적벽돌 담장 L=7.2m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85호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성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사전내용	비고
류충호	인천 남동구 고잔동	차고지외 밤샘주차 (2010.11.25) (00:28 ~ 01:30)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인천81바2610
강순식	인천 남동구 남촌동	차고지외 밤샘주차 (2010.11.19) (00:11 ~ 01:48)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인천84바9472

2. 공시송달기간 : 2010.12.27 ~ 2011.01.12 (17일간)

3. 내 용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의 2, 3(차고지외 밤샘주차)
준수사항 위반

4. 참고사항

처분사전 통지서 수령대상자는 2011.01.12일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453-2914)로 오셔서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453-2914, FAX 453-2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86호

행정복사기 임차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행정복사기 임차 단가 계약

나. 입찰개요

품 명	규 격	수량	기본매수	비고
디지털복사기 (중속)	0 분류 및 양면복사, 자동원고이송 0 네트워크 프린터 가능 0 분당 30매 이상 0 축소확대 25% ~ 400% 0 최대해상도 600dpi 이상 0 연속복사 매수 999매 0 컬러스캔가능(분당 40매이상) 0 국정원 보안인증필 0 최근 6개월이내 생산품 (공고일 기준)	55대	17,000매 (초과매수당 10원)	0 예정수량이며 변동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117,000원 (2011년 예산 : 77,220,000원)

라. 임차기간 : 계약일로부터 만 2년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0. 12. 28(화) 13:00 ~ 2011. 01. 03(월) 13: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01. 03(월) 14:00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아.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 최영철(032-453-2277)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사무기기 임대업)**과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입찰참가등록 품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반드시 **G2B** 분류번호(8자리 44101501)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시 복사기 제조사 또는 판매본사로부터 제품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격이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가. 본 입찰은 **단가계약, 제한(지역)경쟁입찰, 최저가입찰, 전자입찰**입니다.
-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 가격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117,000원) ±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개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행정제재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등,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경영재정과 최현철(☎ 032-453-2266)으로 문의하시고 복사기 사양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경영재정과 최영철(☎ 032-453-2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주식회사 토토산업 외 145건
- 공고기간 : 2010. 12. 28 ~ 2011. 01. 12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0년 11월 3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별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자 명단 (2010년 11월 3회차)

연번	접수번호	차량번호	납부자명	우편번호	주소	등기번호	배달결과일자	배달결과	사유	비고
1	00027609	03구1732	주식회사 토토산업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6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	00027617	04부3298	이경희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64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3	00027621	05로8432	이선기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6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4	00027623	05대1162	오종진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76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5	00027642	07모7463	김종오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6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6	00027646	07어9484	주식회사 신우알앤씨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70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7	00027654	08우3449	서 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71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가입촉구서
8	00027666	12두7677	정초자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77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9	00027676	12두7816	박용태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73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10	00027722	17무9174	최동조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75	2010-12-27	보관중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11	00027730	18구6427	이유진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77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12	00027850	20오1900	태양렌트카(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80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가입촉구서
13	00027852	20오7431	조영란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8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14	00027866	25나5753	정보화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8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15	00027876	25모6176	이성남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8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16	00027878	26구2912	한성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786	2010-12-21	보관	주소불명	가입촉구서
17	00027884	26구7666	김정숙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88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18	00027886	26루5917	신진희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70878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19	00027894	27너6818	이승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9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0	00027902	27러6782	박강선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79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1	00027912	28버4147	나을석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79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2	00027920	31부4982	안성우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79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3	00027930	35소5381	노현경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79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4	00027952	40마8752	이영석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799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25	00027958	41서4549	최상숙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0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6	00027962	41서4670	김영순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803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27	00027964	41주5321	임복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04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28	00028042	46조7025	박지훈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09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29	00028056	48서1206	(주)신우알앤씨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12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30	00028064	51두5334	채전석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14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31	00028078	54러6966	이선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1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32	00028092	57오3378	정일남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1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33	00028094	58노5992	모인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20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34	00028102	58주5946	홍성부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2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35	00028106	59구1609	김영길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822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36	00028110	59어9053	이상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2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37	00028128	63부5402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26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가입촉구서
38	00028134	64우4676	김종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28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39	00028146	70보1836	이관수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70882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40	00028148	71나4107	(주)신우알앤씨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30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41	00028156	73누5822	조정수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831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42	00028164	73모4000	이정화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70883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43	00028176	75서1249	이은경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3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44	00028182	78오2918	박준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3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45	00028186	80도5812	박성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38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46	00028188	82다1577	김광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39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47	00028196	86거9324	이진복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41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가입촉구서
48	00028204	86러3274	주식회사 신우알앤씨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42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49	00028212	86보5361	WANG CHUNXIANG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4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50	00028218	86부5722	김선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4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51	00028230	86어1383	(주)에이치에이씨피건설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708846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52	00028242	89고2793	조성수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708848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53	00028248	91수3412	(주)동와건설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49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54	00028252	91수3426	정다운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850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55	00028260	92라4957	권성필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5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56	00028262	94버9527	새솔환경개발(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708853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57	00028264	94보9487	(주)엔나인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54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가입촉구서
58	00028275	인천30무5026	(주)대림엔지니어링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55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59	00028282	인천30바4762	한철웅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857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60	00028288	인천31나7200	(주)오성오에스씨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708858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61	00028298	인천31도7329	이승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60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62	00028308	인천32고2579	명지씨엔씨(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63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63	00028310	인천32너1691	이승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64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64	00028312	인천32다7474	영서하이테크(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708865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65	00028326	인천33구4904	(주)이클리어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867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66	00028328	인천33너9169	(주)재우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708868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67	00028336	인천34로6879	나기창	403-09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444202708870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68	00028350	인천70거8350	박경춘	153-0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444202708873	2010-12-20	보관	수취인불명	가입촉구서
69	00028362	인천7노2935	조준영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7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70	00028364	인천80너7340	함창숙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76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71	00028372	인천80머5950	김학송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79	2010-12-22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72	00028376	인천83나7650	S 환경시스템(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80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73	00028378	인천86가5883	정두섭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881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74	00028396	인천남동차2037	김여옥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84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가입촉구서

75	00028400	인천남동차4237	오정순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88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76	00028402	인천남동차4249	위이복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87	2010-12-23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77	00028426	02서8513	김흥태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9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가입촉구서
78	00027595	01무5561	장미나	441-110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세류동	1444202708893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부과예고서
79	00027601	01주3156	윤경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95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80	00027615	04두4920	박성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89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81	00027619	05다1731	김락영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98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부과예고서
82	00027625	05서5136	박복남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89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83	00027633	06부2777	조문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0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84	00027644	07서7909	박종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04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85	00027648	07우3070	지앤지개발(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05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부과예고서
86	00027650	07조2048	유성만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0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87	00027652	08거8349	SENANAYAKE M. M. PALA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708907	2010-12-21	보관	주소불명	부과예고서
88	00027678	12두7821	신한카드(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13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부과예고서
89	00027704	15두2641	유규현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1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0	00027706	15저2044	양기선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1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1	00027710	16모4608	박종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18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2	00027712	16모4774	김정훈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1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3	00027720	17모7487	김현수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2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4	00027834	19구6808	김영희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924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5	00027836	20더4132	박성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2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6	00027838	20더4803	손건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2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97	00027856	24더4484	정영관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27	2010-12-21	보관	주소불명	부과예고서
98	00027858	24부3963	김선자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28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부과예고서
99	00027862	25가5231	이미선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30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00	00027868	25나9607	박나영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3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01	00027870	25도7857	구선경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3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02	00027890	26조4001	이웅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3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03	00027896	27누5966	안세자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37	2010-12-27	보관중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04	00027900	27러2542	김광명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38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05	00027916	28버6525	최은희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70894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06	00027928	33누7360	강수지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44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부과예고서
107	00027938	37수1009	신동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4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08	00027942	38마4134	장재화 외1(임순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49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09	00027948	40거3547	박호성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51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10	00027950	40다6007	윤진수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952	2010-12-21	보관	수취인불명	부과예고서
111	00027966	41주5374	박용식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54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12	00028048	48라5124	김응기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5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13	00028050	48머1182	김민혁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958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14	00028052	48무5115	남동우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5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15	00028060	49라2232	김숙영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6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16	00028074	53모3319	송순영외1인(정우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64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부과예고서
117	00028076	54누2924	임경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6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18	00028080	55러4317	주미애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66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19	00028098	58주5224	금정섭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6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20	00028100	58주5653	김계희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708968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21	00028104	59구1091	정윤례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969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22	00028112	59우2629	손도영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70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23	00028116	61고7523	강민정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7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24	00028126	63로6055	이광영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975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25	00028138	67주8446	오관석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8978	2010-12-21	보관	주소불명	부과예고서
126	00028152	73구1680	문성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81	2010-12-21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27	00028168	73부8207	양우식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84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28	00028194	86거4001	손근승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898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29	00028226	86소8764	배인옥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94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0	00028232	86어8214	김태형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899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1	00028246	90두1022	라현수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98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2	00028271	인천30나4555	조용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899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3	00028273	인천30루7020	이금례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9000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4	00028277	인천30무9533	이철환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900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5	00028290	인천31노8676	김영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9003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6	00028296	인천31도4950	이상재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900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7	00028304	인천31루9407	(주)유니마이저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709007	2010-12-21	보관	이사불명	부과예고서
138	00028322	인천32바2112	송태영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9010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39	00028324	인천33가9774	성정미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709011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40	00028330	인천33다3636	최지나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709012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41	00028342	인천35러8719	임명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709015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42	00028352	인천70거9911	함명이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709016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43	00028356	인천70라5992	이영식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709017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144	00028366	인천80라6119	이성주	136-1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444202709019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45	00028414	인천남동차5722	방일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709026	2010-12-20	배달	경비원수령	부과예고서
146	00028424	41주5607	이에철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709029	2010-12-24	보관	폐문부재	부과예고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93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거 작성, 된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 시지정문화재(3개소)

- 인천시 기념물 제3호 『김재로묘』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 64-13)
- 인천시 기념물 제50호 『이여발묘』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1)

-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6호 『논현포대』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15-56외)

다. 상세내용 :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라. 열람장소

-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남동구청(문화홍보실) 및 각 동 민원실 도면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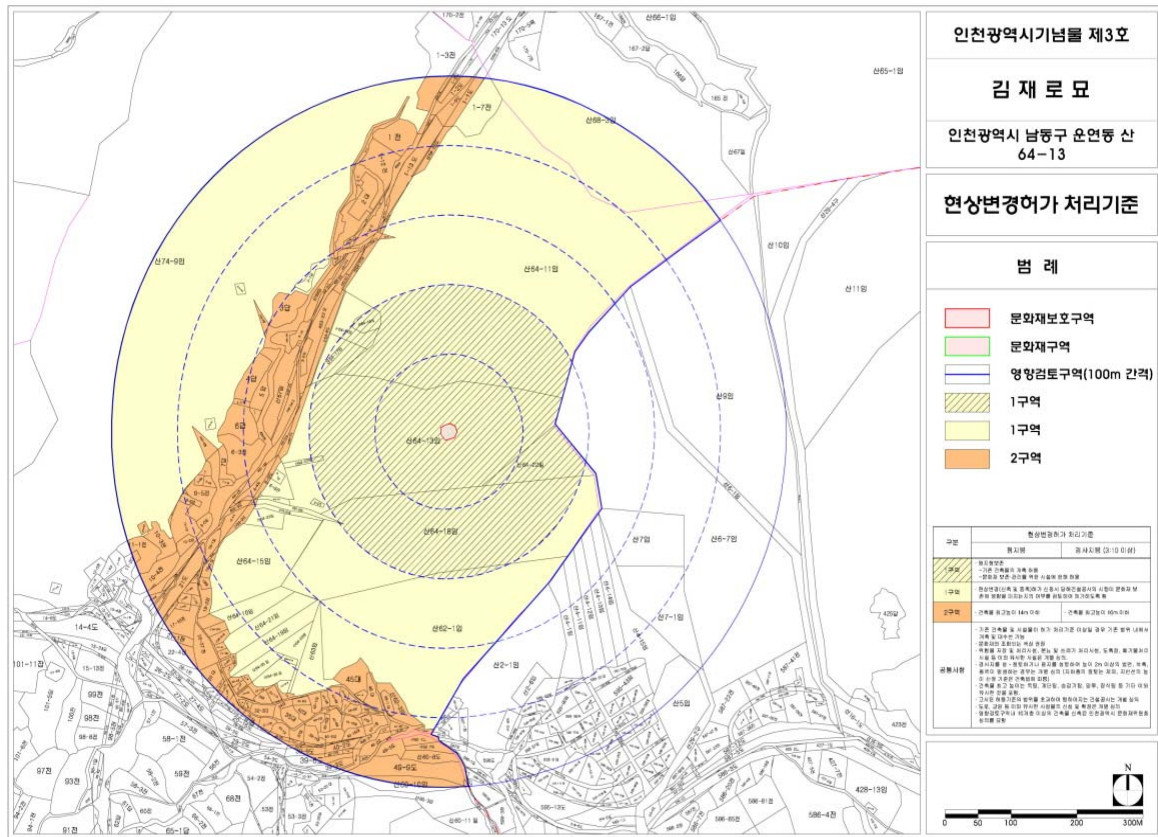
마. 공고기간 : 2010. 12.30 ~ 2011. 1.17(19일간)

바. 특기사항

- 위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01.17일까지 남동구청 문화홍보실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홍보실 문화재 담당자
- 기타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홍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문명례 ☎ 453-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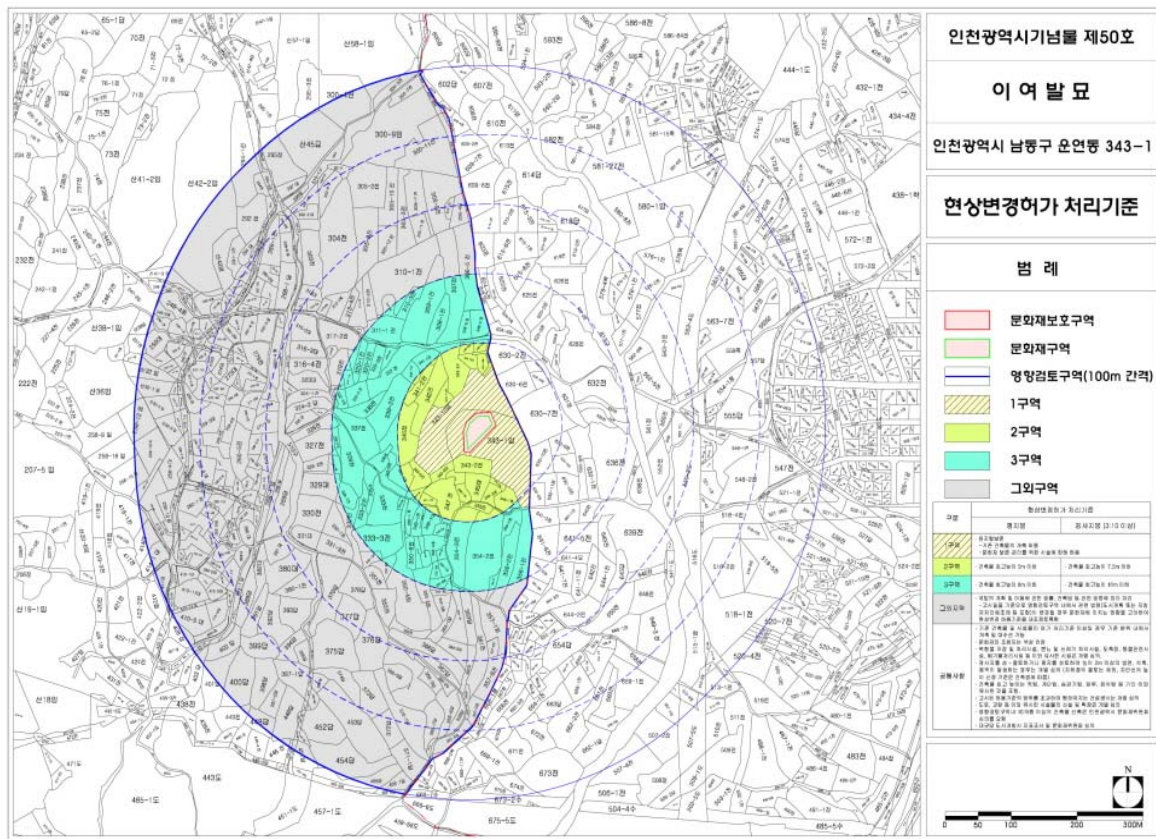
1 인천시 기념물 제3호 김재로묘

구 분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보존 -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허가 신청시 당해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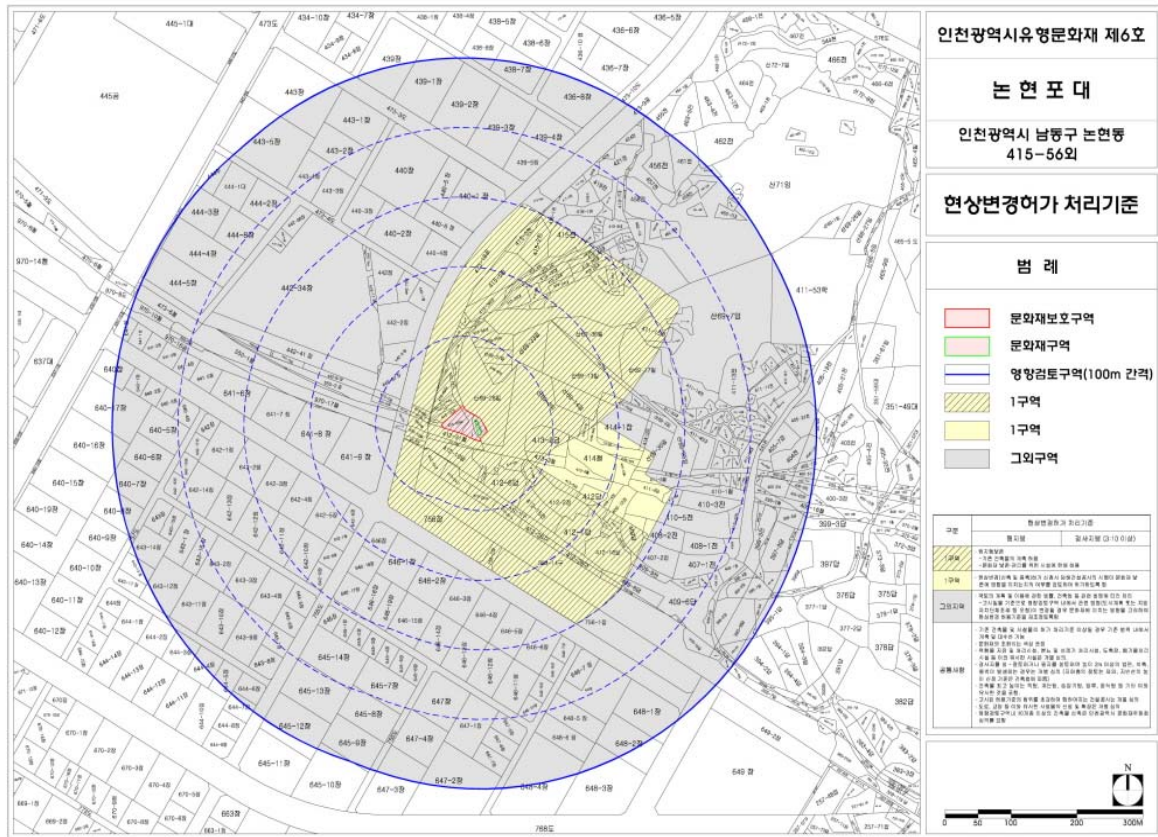
2 인천시 기념물 제50호 이어발묘

구 분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보존 -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 이상으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요함. - 대규모 도시 개발시 지표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③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6호 논현포대

구 분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보존 -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허가 신청시 당해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그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요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94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 12. 30 ~ 2011. 1. 20 (20일)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11. 1. 20.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고잔동 184 ☎032-442-6660)
 4. 대상차량 : 경기40모2785(라노스)외 28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0 ~ 5)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 유 주		보관장소
	차량번호	차 명	방치장소	성 명	주 소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구월3동 1104-22번지 앞	장규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280번지1호	서울폐차사업소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 킹캡	만수2동 2-21번지 신한아파트 B동뒤 주차장내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4번지11호	서울폐차사업소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만수6동 984-6번지 주차장 내 사유지	박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43번지 7호	서울폐차사업소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 킹캡	남동공단 154블록 7롯데앞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3번지10호	서울폐차사업소
491	54마1810	아반떼	구월3동 1092-53번지 앞	이순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7번지 38호 201호	서울폐차사업소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구월1동 팬더아파트 뒤편 광운교회 앞	(주)세종씨앤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번지 10호 시화공단 4나-111	서울폐차사업소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논현동 633-1번지 논현주공 5단지아파트 515동지하주차장내	양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65번지 8호	서울폐차사업소
498	경기89고3815	포터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김형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번지 주공아파트 810-1007	서울폐차사업소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김용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54-1번지 설악빌라 1-301	서울폐차사업소
500	인천7로3353	포터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3-102번지 동신아트빌 102-303	서울폐차사업소
501	86라3384	포터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이창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08번지16호 102호	서울폐차사업소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조정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9-8번지	서울폐차사업소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윤성철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44번지 1호 201호	서울폐차사업소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주)부경이앤씨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44번지 96호 2층	서울폐차사업소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서진국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66번지 38호	서울폐차사업소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43번지	서울폐차사업소
507	충남7포3411	포터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변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31번지3호	서울폐차사업소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0번지 51호	서울폐차사업소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0번지 6호 201호	서울폐차사업소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이종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4번지 5호 5층	서울폐차사업소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차금봉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3번지	서울폐차사업소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박태용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72번지 84호 청구그린빌라 102동 201호	서울폐차사업소
513	서울85두1099	봉고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7번지 신우빌딩 2층	서울폐차사업소
514	87나1112	포터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박 혁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87번지 7호 광명아파트 2동 603호	서울폐차사업소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신귀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68번지 108호 BO1호	서울폐차사업소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소보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235호 신흥아이파트 109-905	서울폐차사업소
517	경기65가4106	소나타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신현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51번지2호	서울폐차사업소
518	인천80머1692	포터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주)청원건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벽령면 진촌리 703번지 20호	서울폐차사업소
519	02무6244	엑센트	고잔동 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문용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17번지 1호 BO4호	서울폐차사업소
		이	하	여	백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비 고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저당물부번호 : 4105-2004-010832	4,000,000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031-481-3545	세무과-18769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4406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경찰서:031-480-0114	경비교통과-2842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tel:031:481-2965)	산업교통과-10125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7	교통관리과-8607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시연수구:032-810-7953	교통행정과-24755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15947/06006573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17020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연수구:032-810-7953	교통행정과-44128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서울금천구:02-890-2485	교통지도과-3723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산업위생과[300000원]	산위-1472/07001759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단원경찰서:031-8040-0158	경비교통과-3318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8	교통관리과-6971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8	교통관리과-7616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시연수구:032-433-0112	교통행정과-35877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8	교통관리과-13816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부평구:032-509-6746	교통행정과-53405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부평구:032-509-6740	교통행정과-57874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남동구	주차관리과-1789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 단원구청	세무과-19808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복지국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24931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세무2과-2573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획경영국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2163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 서초구청 [2006-09-016165]	교행-91180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 서초구청 [2006-09-016166]	교행-91180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획경영국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21517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화성시동부출장소 ☎031-369-4801	건설산업과-2738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초구청 교통운수과검사팀 ☎570-6601	교행-91180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초구청 세무2과	세무2과-1065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부과징수부-473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 구로구청[2008-12-103516]☎860-3211	주차관리과-8697-1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초구청 교통운수과 검사팀	교운 91180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장	징수부-454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교통행정과-25172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획경영국 기업환경과	기업환경과-25369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세무2과	13410-685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8카단35337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강동구청세관	세관13410-1494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춘천시	교통91150-402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교통관리과	교통91113-4195(98/7일괄)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교지 91110-2078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종로구청 교통지도과	교지13621-5909(990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강원도원주시청	교통91123-446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동대문구청 교통관리과	63310-495(99년 1월)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원주시청	교행91123-29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시 광진구청	교지91110-685(9910)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 59451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교통관리과	교통91113-2629(9111월)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원주시청	교행91123-1128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	교통63310-417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시 송파구청	교통91113-6139(99.11)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대문구청 교통지도과(0006)	교지91123-3846(3040)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 신천동 7-19	지관1621-1333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	교통63310-247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3412-4041)	교통63310-2938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장 (민원봉사과)	민원 91150-11060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특별시청(3707-8684)	교단91120-3117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3412-4041)	교통63310-5398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3412-4041)	교통63310-27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63310-66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수서경찰서 02-3412-4041	교통63310-1396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수서경찰서 02-3412-4041	교통63310-355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민원봉사과(410-3158)	민원91150-540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강남구청	교통지도과-23806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인천광역시중구 ☎760-7565	교통행정과-36073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2)	환경과-12181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강동구청 징수과	징수과-2098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환경보호과	환경67087-456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서울시구로구	교지91100-33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영월군	지경91113-217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수정구청장	건설91110-34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인천시남동구청	교통91110-1333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마포구청장	교지91110-1102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 교통과	교통91180-44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성남시 수정구청장	건설91110-24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광명경찰서장	교통63310-55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환경보호과	환경67087-165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성남 중원구청장	건설91110-182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91180-33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영등포구청장	교지91113-138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구리시청 교통지도계(550-2293)	교행91123-1052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금천구청장	교지91110-1113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양시만안구청031-463-4366~7	건교13621-292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211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강서구청	주차91150-157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인천 계양구청	교행91100-67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차량등록사업소(310-2133)	차량91180-1069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172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부천중부경찰서	교통63310-438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3463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부천중부경찰서(032-679-5000)	교통63310-109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30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TEL)031-310-3468	교지13621-1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인천계양구 (032-450-5684)	교행91100-210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인천계양구 (032-450-5684)	교행91100-210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91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세무과(031-310-3070)	세무13410-298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417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국민연금관리공단부천지사	가일52104-50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524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 환경보호과(031-310-2245)	환경보호과-507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청환경보호과(310-3103)	환경보호과-933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2633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	징수부-233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환경보호과(031-310-3102)	환경보호과-115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480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1702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1959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359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1393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1393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324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9703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2052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1446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산시단원구청	세무과-1980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2607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1080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5687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정읍시장	교관91000-182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천안시	교통과-10241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구로구청 세무1과	세무1과-01091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서울구로경찰서(02 862-1777())	교통63310-100315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과-1039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구로구	차량등록-618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구로구	차량등록-618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인천시 남구청교통민원과	교통민원과-55690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대우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15-2007-000859	20,000,000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안산단원경찰서:031-480-0114	경비교통과-7741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안산단원경찰서:031-8040-0158	경비교통과-11891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경기도 시흥시 TEL)031-310-3486	주차단속계--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 2612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고객지원부-1080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시흥직장고객지원부-156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101)	환경정책과-14577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시세정과(031-310-3501,3502)	시흥시청세정과-20548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납부지원2부-190237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101)	환경정책과-31412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시차량관리사업소[300000원]	차량관리-14812/10000808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강원도 춘천시청	교통과-14114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차량관리사업소(031-310-5166,5168)	차량관리-58983/09032167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차량관리사업소(031-310-5166,5168)	차량관리-58983/09032168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5977)	환경정책과-8299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11-2001-016910	3,000,00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스카이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11-2002-004821	2,000,00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카단 5141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청 교통지도사업소	교지 91123-3311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중부경찰서	교통63310-392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징수과(032-320-2915)	징수13410-1602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1621-206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 302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394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4769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시부평구청	교통행정과-19119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7165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 시민봉사과[300000원]	시민봉사-33771/04008796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	원미구환경위생과-344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시교통관리과(032-440-6677)	교통관리과-7628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구청 ☎032-509-6304	세무과-21410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서울지방법원 판사 정용상	사건98카단45464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수정구청장	지경91110-131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서울시 성북구청장	교지91150-423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민원봉사과)	민원91153-10340(99-186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교통행정과	교행91123-1005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환경위생과 ☎390-0245	환경67100-1231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광주군 환경보호과	환경67232-308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세정과 ☎390-0192	세정13410-1266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교통행정과 ☎390-0293	교통91123-12110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서울시 종로구청장/교통지도과	교지13621-924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교통행정과 ☎390-0293	교통91123-10118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안산경찰서	교통63310-980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환경위생과 ☎390-0245	환경67100-1148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세정과	세정13410-13044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종합민원처리과(390-0297)	민원91153-1756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004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민원91153-10700(01-348)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176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세정과)	세정 13410-1278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510-10142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161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세정과	세정13410-1310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331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민원91153-1756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3682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453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환경위생과-590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세정과	세정과-1204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2874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86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세정과-1417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610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환경위생과)[300000원]	환경위생-2866/0500179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58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종합민원처리과[300000원]	종합민원-20767/0801370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세정과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766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177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세정과(031-390-0530)	세정과-1351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4464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178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세정과(031-390-0530)	세정과-15368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666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1373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879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
499	인천70다6589	타운너	김용철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2801-1999-203698	8,040,000
499	인천70다6589	타운너	김용철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 (☎ 819-3838)	차량91153-645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인천시 남구청 교통과	교통91000-3537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대전시 서구청	교통관리과-2872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남구청 (2004-002403)	교통91180-13214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인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16658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인천광역시남구청장[10000원]	교통91180-5639/05002034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인천남구청	환경녹지과-1246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인천시남구청장[300000원]	교통과-6380/05008079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33894/06013743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33894/06013744
499	인천70다6589	타운어	김용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	징수부-401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위67100-79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위67100-480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시 남구청 교통과	교통91000-631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남구청 (2002-007043)	교통91180-85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67100-454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교통91000-325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세무13410-5619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0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동구청교통과(032-453-2766)	교통-2947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991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1430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2004-04-101508)	교통91000-24007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세무과-2897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청(440-6246)	주차관리과-1106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8418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시 남구청 (2003-09-100151)	교통91000-3752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중구청	교통91000-644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2004-08-201466)	교통91000-1021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환경녹지과-699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3768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동부경찰서(032-762-0180)	경비교통과-5731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880-4205)	세무과-25387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20690/0500850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1319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시남구청장[300000원]	교통과-35908/0500633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8591/0501654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8591/0501654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동구청교통과(453-2897)	교통과-2242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녹-882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205)	세무과-1647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과	환녹-869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35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위-2231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48)	환위1580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환경위생과-3549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20)	환경보전과-890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20)	환경보전과-2283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20)	환경보전과-1127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환경보전과-2695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천시청교통지도사업소	교지91123-29210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위생과-793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원미구청 건설과 T.032-650-2372	건설과-59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T.02-710-3485	교통지도과-103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경찰서 T.032-514-9937	경비교통과-2222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청주시흥덕구 경제사회과 T.043-269-8367	경제사회과-607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서울중구청 T.02-2260-1436	교통지도-3262(04.1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남동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1483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18743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천시원미구청	원미구건설과-1157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3923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120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강서구 주차관리과 T.02-2657-8778	주차관리과-1229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세무과	세무과-22245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영등포구	교통지도과-18253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10690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경기군포시	교통지도과-165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행91153-80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2193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488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영등포구	교통지도과-1040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	환경위생과-2108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원미구	경제교통과-15042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영등포구 ☎02-2670-3890	교통지도과-13612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교행91153-6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청	부평구교행-3286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구(509-6643)	환경위생과-37652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구(509-6664)	환경위생과-1755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032-509-6643)	환경위생과-20303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032-509-6643)	환경위생과-4300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	환경보전과-1370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	세무과-1991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2789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	환경보전과-1369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보전과-31618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 T.453-2396	청소67510-1040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 남부경찰서 ☎032-468-5011	교통63340-206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교통과(전화032-453-2755)	교통91180-4990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	교통91110-6754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세무과(032-453-2298)	세무13410-3696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292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 세무과(453-2299)	세무과-2127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시남동구청	환경위생과-12407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032-453-2756)[5000원]	교통과28331/0401078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교통과[300000원]	교통과-10637/06000602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032-453-2926)[600000원]	교통과24304/06006928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032-453-2926)[300000원]	교통과24304/06006929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300000원] ☎032-453-2926	교통과-1128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청 (2004-01-104005)	교지91123-20359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환경위생과(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856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	원미구환경위생과-19257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	원미구환경위생과-34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원미구청 (2004-06-112582)	원미구건설과-596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 차량관리사업소[300000원]	차량관리-17521/05002496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북부지사(	징수부-114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9643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2138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청(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10215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28615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1366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청☎032-320-3610	차량관리과-48867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환경위생과-30992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환경위생과-14857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677	세무1과-936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환경위생과-31637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중부경찰서(경기38년6964)	경비교통과-256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인천시청	교통관리과-7602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청 ☎032-320-2086~7,3844,3866	도시미관과-1351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오정구청	환경녹지과-10558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인천시청	교통관리과-1356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인천부평구청	주차관리과-7176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1118-2002-006051	1,900,000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부경찰서경비교통과(02-359-0663)	교통63310-3725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LG카드(주) *저당을부번호 : 1114-2002-004663	20,000,000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170666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은평구청02)350-1486,1487	교지91115-0212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대문경찰서(02-313-9395)	교통 63310 - 57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환67100-342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환67100-433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대문경찰서(02-313-9395)	교통 63310 - 184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부경찰서(02-359-0663())	교통63310-008560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대문경찰서(02-313-9395)	교통63310-006199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2793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 서대문구청☎02-330-1486	교통지도과-26645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시부평구청	지교91110-793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시부평구청	지교91110-2403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서울시강서구청	주차91150-1507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 T.881-4232	교통63310-7344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032)773-0013	교통63310-99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 t.032-762-4232	교통63310-3646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3768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경-8824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부경찰서(032-861-0180)	경비교통과-004850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350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구청(032-880-4348)	환경위생과-15804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구청	환경위생과-35490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032-770-0113)	경비교통과-9214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구청(032-880-4345)	환경보전과-22748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일산구청징수과	징수13410-292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91153-438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일산구청환경위생과(☎-900-6243)	환경67100-2514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 일산구청장(T 900-6186)	세무13410-131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서울특별시	교단91120-753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중구청교통지도과	교지91123-1212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91153-215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성동구청교통지도과	교지91110-1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961-2646)	차량91153-10498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961-2647)	차량91153-1147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일산구산업교통과(전화:031-900-6297)	산업91000-15394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961-2647)	차량91153-10460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노원구청	교지91110-188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권선구청	권선사산13621-9950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서울중구청교통지도과(02-2260-1466~9)	교지91123-4(990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사회환경국 환경청소과	환경67100-1000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100-10396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종로구청	교지1621-2486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100-1146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186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031-961-2647)()	차량-618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환경보호과(031-961-2997)()	환경보호과-801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57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031-961-2647)	차량등록-13762/0501000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1376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468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일산서구청(031-930-6900)	환경위생과-743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86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138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2429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031-961-4203~4)	환경보호과-3580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031-961-4204)	환경보호과-1347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	환경보호과-2381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	환경보호과-13181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	환경보호과-2856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	환경보호과-1295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	경비교통-27624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청	환경보호과-15031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경찰서경비교통과	교통63310-4360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경찰서장	교통63310-10860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03-5190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사회환경국 환경과	환경과-2197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사회환경국 환경과	환경과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사회환경국 환경과	환경과-31481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환경국 환경과	환경과-18742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환경국 환경과	환경과-34965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07007467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인천광역시중구	교통행정과-19507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5678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0482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9275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청	환경위생과-19784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3104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	환경위생과-33618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인천광역시 동구청 ☎032-770-6872	교통과-30524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인천남동구청교통과[30000원]	교통과-44309/06005693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중앙구청 세무2과	세무2과-12241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2490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중랑구	교통행정과-50117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중랑구청	교통행정과-16308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9204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99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9126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6968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7997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청 시세과 T.032-509-7036	시세과-3516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위67100-9861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서울중구청 T.02-2260-1466	교통지도-8391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남구청 (2004-04-106319)	교통91000-24007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경찰서 T.032-514-9937	경비교통과-9373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84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경찰서 T.032-514-9937	경비교통과-428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청교통행정과	교통91153-140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세무과	세무과-22245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4039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05-11-105721)	교통행정과-722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	교통행정과-13195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한국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	도로영업팀-645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5436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	환경위생과-2108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부평구(509-6643)	환경위생과-37652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509-6664)	환경위생과-14541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032-509-6643)	환경위생과-20303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032-509-6643)	환경위생과-4300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세무과-557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보전과-13707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세무과-19914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2789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환경보전과-1369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보전과-31618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삼성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1118-2002-012541	6,000,00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지역교통과(71러2198대체)	지교91150-3-02-4566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환경위생과	환위67232-886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 세무2과(2650-3345~8)	세이1341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주차91150-7253(03.7.22)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주차91150-8125(03.8.1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2003-04-209238	주차91150-910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서경비교통과(2648-0032)	경교3310-1322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2003-07-104934	주차91150-12358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환경청소과(71러2198대체)	환경청소과-48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2003-12-201258)	주차 91150-688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2004-04-112350)	교통지도과-21535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2004-05-102061)	교지91113-2165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2004-06-111331)	교통지도과-21802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2004-05-101646)	주차91150-14435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구로구청 운수지도 860-2477	교행24538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교통행정과(2650-3680)	교행9118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2004-11-104035)	주차91150-486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 교통행정과(2650-3680)	교행9118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주차관리과-9193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국민건강보험 양천지사 ☎2640-4155	자격징수부-1069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 ☎02-2620-3717	교통행정과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세무과	세무과-10150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 세무2과	세이13410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598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886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02-2602-7994)	교통 63310 - 2193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02-2602-7994)	교통 63310 - 255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554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11652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02-2602-7994)	교통 63310 - 6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513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02-7994)	교통63310-001051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02-7994)	교통63310-001408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3876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교통행정과(2657-8745)	교통행정과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497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구청환경위생과(02)2657-8625)	환경위생과-23490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 교통행정과(2657-8715)	교통행정과-41747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교통63310-007713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2100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교통행정과(2657-8745)	교통행정과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6349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6888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교통과30251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315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7317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환경과-29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환경과-10626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환경과-21358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광역시청(032-440-6678)	교통관리과-9138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광역시청(032-440-5992)	세정과-14806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중부경찰서(032-433-0112)	경비교통과-5293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중구청	세무과-13005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광역시 중구청 ☎032-760-7396	환경위생과-18935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남구청	교통민원과장-39303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중구청[600000원]	교행1057/08004609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중구청[300000원]	교행1057/08004610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남구청(032-880-4204)	세무1과-450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2127-4891~6	교관63310-6370(0301)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3-09-105216)	교통지도과-4295(0309)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3-10-102857)	교통지도-5190(031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3-11-102041)	교통지도-6759(0311)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3185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 13854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4-02-106807)	교통지도-7781(04.02)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징수1621-164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장(세무2과)	세무2과-12765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2127-4871)	교통행정과-8518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청량리경찰서	교통과-2978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자동차등록팀)	교통행정과-책보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환경위생과(02)2127-4652)	환경위생과-2246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일괄압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청량리경찰서	교통과-28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중구청(02-2260-1466) (2005-12-204299)	교통지도-4856(05.12)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2127-4871)	교통행정과-14965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중구청(02-2260-1466) (2006-01-107926)	교통지도-6963(06.01)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205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의무보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의무보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 서대문구청 ☎ 330-1486 [2006-08-102882]	교통지도과-819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일괄압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 중구청☎2260-1466~9[2007-10-202346]	교통지도과-435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일괄압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 중구청☎2260-1466~9[2008-06-103321]	교통지도과-19809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8764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애포아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02-969-1642())	교통63310-00070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02-969-1642())	교통63310-00070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노원구청 징수과 세외수입팀	징수과(세외)-10499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4672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939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258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2615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서울시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26157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대우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2826-2008-004818	23,000,000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경기도 여주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20082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여주군청	환경보호과-18148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용인시 수지구청	산업환경과-28289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2634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인천 남구 세무1과	세무1과-18066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인천광역시 남구청	환경보전과-26956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강화경찰서(032-932-4972)	생활안전교통과-2590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6393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구청	세무과-21523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46235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구청	세무과-5418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시서구청	교통민원과-38743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광역시서구청	교통민원과-56109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 동안구청 ☎380-4414	환경67100-1852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 동안구청장(☎031-389-4296)	동안세무13410-1033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동안구청031-389-4414	환경67100-2626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동안구청031-389-4411	동안환경67100-1446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국민건강보험공단안양동안지사	지관1621-795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동안환경67100-3217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시민과	시민91153-3665/03-72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3696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8379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371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청 시민과(389-2438,9)[300000원]	시민과-14247/05004609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784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청 시민과[300000원]	시민과-246/05023754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장(031-389-2248)	환경위생과-3912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4405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031-389-4414	환경위생과-9819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031-389-4414	환경위생과-607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동안환경위생과-11852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405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동안환경위생과-1452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8427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784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8725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 동안구청(031-389-4414)	환경위생과-19578
517	경기65가4106	소나타	신현무	삼성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2d-2000-003921	2,000,000
517	경기65가4106	소나타	신현무	용인시 처인구청	세무과-6531
518	인천80머1692	포터	(주)청원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032-770-7123	자격징수부-151
518	인천80머1692	포터	(주)청원건설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032-770-3575	남인천고객지원팀-2837
518	인천80머1692	포터	(주)청원건설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032-451-9505	납부지원2부-248544
518	인천80머1692	포터	(주)청원건설	웅진군청재무과	재무과-28171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남구청(032-880-4204)	세무1과-15731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남구청(032-880-4204)	세무1과-4503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중구청교통행정과(0327607568)	교통행정과-29821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광역시 남구	교통민원-34281/09006699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광역시 남구	교통민원-34281/09006700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연수구청	세무과-17206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연수구청	교통행정과-41948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비 고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강남구청	교통지도과-23806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강동구청 징수과	징수과-20982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강동구청세관	세관13410-1494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강서구 주차관리과 T.02-2657-8778	주차관리과-1229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강서구청	주차91150-157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주차관리과-9193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2003-12-201258)	주차 91150-688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2004-05-101646)	주차91150-14435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 (2004-11-104035)	주차91150-486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 교통행정과(2657-8715)	교통행정과-41747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 세무2과	세이1341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주차91150-7253(03.7.22)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주차91150-8125(03.8.1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2003-04-209238	주차91150-910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02)2657-8773~6 2003-07-104934	주차91150-12358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교통행정과(2657-8745)	교통행정과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강서구청교통행정과(2657-8745)	교통행정과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강서구청환경위생과	환위67232-886
495	91구7183	액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강원도 춘천시청	교통과-1411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강원도원주시청	교통91123-44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경기군포시	교통지도과-165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100-10396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100-1146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186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경기도 고양시 사회환경국 환경청소과	환경67100-10002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879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004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161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176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1331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67510-10142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177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178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2874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610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766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4464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666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453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863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58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경제환경국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1373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세정과(031-390-0530)	세정과-1351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경기도 군포시 세정과(031-390-0530)	세정과-1536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30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3463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91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417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524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172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환경67087-1211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시흥시 TEL)031-310-3468	교지13621-12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경기도 시흥시 TEL)031-310-3486	주차단속계--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tel:031:481-2965)	산업교통과-1012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1959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2633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480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1080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1446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2052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2607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9703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1393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324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359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경기도 안산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5687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동안환경위생과-11852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동안환경위생과-1452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784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405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8427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8725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경기도 여주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2008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	경비교통-27624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 일산구청장(T 900-6186)	세무13410-131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일산서구청(031-930-6900)	환경위생과-743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91153-438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2429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91153-215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1376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031-961-2647)	차량등록-137620501000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961-2647)	차량91153-10460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961-2647)	차량91153-1147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961-2646)	차량91153-10498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031-961-2647)()	차량-618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	환경보호과-1295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	환경보호과-13181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	환경보호과-15031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	환경보호과-2381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	환경보호과-2856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138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4687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57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031-961-2997)	환경보호과-186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031-961-4203~4)	환경보호과-3580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031-961-4204)	환경보호과-1347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고양시청환경보호과(031-961-2997)()	환경보호과-801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광명경찰서장	교통63310-55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광주군 환경보호과	환경67232-3085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구로구	차량등록-618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구로구	차량등록-618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구로구청 세무1과	세무1과-01091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구로구청 운수지도 860-2477	교통2453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구리시청교통지도계(550-2293)	교통91123-10529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국민건강보험 양천지사 ☎2640-4155	자격징수부-1069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징수1621-164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부과징수부-473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고객지원부-108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1621-20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1206
518	인천80머1692	포터	(주)청원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032-770-7123	자격징수부-15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북부지사(	징수부-1141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장	징수부-45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	징수부-233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국민건강보험공단안양동안지사	지관1621-795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	징수부-4014
518	인천80머1692	포터	(주)청원건설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032-770-3575	남인천고객지원팀-2837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시흥직장고객지원부-154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국민연금관리공단부천지사	가일52104-50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3682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민원91153-1756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세정과	세정13410-1310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세정과	세정과-1204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 종합민원처리과[300000원]	종합민원-20767/0601370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민원91153-10700(01-3488)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세정과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세정과-1417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	환경위생과-590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민원봉사과)	민원91153-10340(99-186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세정과)	세정 13410-1278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환경위생과)[300000원]	환경위생-2866/0500179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교통행정과	교행91123-1005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교통행정과 ☎390-0293	교행91123-10118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교통행정과 ☎390-0293	교행91123-12110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세정과	세정13410-13044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세정과 ☎390-0192	세정13410-12665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종합민원처리과(390-0297)	민원91153-1756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환경위생과 ☎390-0245	환경67100-1231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군포시장/환경위생과 ☎390-0245	환경67100-11483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권선구청	권선사산13621-9950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앤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납부지원2부-190237
518	인천80대1692	포터	(주)청원건설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032-451-9505	납부지원2부-248544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금천구청장	교지91110-1113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남구청 (2002-007043)	교통91180-855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남구청 (2004-002403)	교통91180-13214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	교통91110-6754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 T.453-2396	청소67510-1040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032-453-2756)[5000원]	교통과28331/0401078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032-453-2926)[300000원]	교통과24304/06006929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032-453-2926)[600000원]	교통과24304/06006928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300000원] ☎032-453-2926	교통과-11281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5	인천3노8586	겔로퍼	서진국	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2483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노원구청	교지91110-1889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교지 91110-2078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노원구청 징수와 세외수입팀	징수과(세외)-10499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대우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2826-2008-004818	23,000,000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앤피	대우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15-2007-000859	20,000,000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대전시 서구청	교통관리과-2872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의무보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의무보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3-09-105216)	교통지도과-4295(0309)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3-10-102857)	교통지도-5190(031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3-11-102041)	교통지도-6759(0311)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2004-02-106807)	교통지도-7781(04.02)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동대문구청 교통관리과	63310-495(99년 1월)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939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2127-4871)	교통행정과-14965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2127-4871)	교통행정과-8518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4672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자동차등록팀)	교통행정과-책보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2127-4891~6	교관63310-6370(0301)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장(세무2과)	세무2과-12765
513	서울85두1099	봉고	㈜엠아이케이텍스	동대문구청환경위생과(02)2127-4652)	환경위생과-2246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동안환경67100-3217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3696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371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4405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784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8379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031-389-4414	환경위생과-607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동안구청장 ☎031-389-4414	환경위생과-981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마포구청장	교지91110-11021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 시민봉사과[300000원]	시민봉사-33771/04008796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 차량관리사업소[300000원]	차량관리-17521/0500249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천시원미구청	원미구건설과-11579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청(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10215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	원미구환경위생과-19257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	원미구환경위생과-34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	원미구환경위생과-34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2138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원미구환경위생과(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9643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징수과(032-320-2915)	징수13410-1602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청 (2004-01-104005)	교지91123-20359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청 ☎032-320-2086~7,3844,3866	도시미관과-13511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시청 교통지도사업소	교지 91123-331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시청☎032-320-3610	차량관리과-4886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천시청교통지도사업소	교지91123-29210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오정구청	환경녹지과-10558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13861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26615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환경위생과-14857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환경위생과-30992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377	환경위생과-31637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원미구청☎032-650-2677	세무1과-9364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부천중부경찰서	교통63310-392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부천중부경찰서	교통63310-438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부천중부경찰서(032-679-5000)	교통63310-1095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부천중부경찰서(경기38너6964)	경비교통과-256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경찰서 T.032-514-9937	경비교통과-2222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경찰서 T.032-514-9937	경비교통과-428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경찰서 T.032-514-9937	경비교통과-9373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	교통행정과-13195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	환경위생과-2108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	환경위생과-2108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032-509-6643)	환경위생과-20303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032-509-6643)	환경위생과-20303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4039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교행91153-6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세무과	세무과-22245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세무과	세무과-22245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청	부평구교행-3286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18743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부평구청 시세과 T.032-509-7036	시세과-3516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삼성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1118-2002-012541	6,000,000
517	경기65가4106	소나타	신현무	삼성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2d-2000-003921	2,000,000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서울특별시	교단91120-753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대문구청교통지도과(0006)	교지91123-3846(3040)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부경찰서경비교통과(02-359-0663)	교통63310-3725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 구로구청[2008-12-103516]☎860-3211	주차관리과-8697-1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 서대문구청 ☎ 330-1486 [2006-08-102882]	교통지도과-8190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 서대문구청☎02-330-1486	교통지도과-26645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 서초구청 [2006-09-016165]	교행-91180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 서초구청 [2006-09-016166]	교행-9118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 중구청☎2260-1466~9[2007-10-202346]	교통지도과-435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 중구청☎2260-1466~9[2008-06-103321]	교통지도과-19809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02-2602-7994)	교통 63310 - 2193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02-2602-7994)	교통 63310 - 255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02-2602-7994)	교통 63310 - 6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02-7994)	교통63310-001051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02-7994)	교통63310-001408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교통63310-007713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강서구청환경위생과(02)2657-8625)	환경위생과-2349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서울구로경찰서(02 862-1777())	교통63310-100315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서울금천구:02-890-2485	교통지도과-3723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 302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279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205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3185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02-969-1642())	교통63310-00070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동대문경찰서(02-969-1642())	교통63310-000707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대문경찰서(02-313-9395)	교통 63310 - 184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대문경찰서(02-313-9395)	교통 63310 - 57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대문경찰서(02-313-9395)	교통63310-006199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서부경찰서(02-359-0663())	교통63310-00856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 1385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수서경찰서 02-3412-4041	교통63310-1396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서울수서경찰서 02-3412-4041	교통63310-355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서울시 광진구청	교지91110-685(991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시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26157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서울시 성북구청장	교지91150-4233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서울시 송파구청	교통91113-6139(99.11)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서울시 종로구청장/교통지도과	교지13621-9249
505	인천3노8586	겔로퍼	서진국	서울시강서구청	주차91150-150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캠	정용철	서울시구로구	교지91100-334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서울중구교통지도과(02-2260-1466~9)	교지91123-4(990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서울중구청 T.02-2260-1436	교통지도-3262(04.11)
509	인천32매7368	카니발	이영진	서울중구청 T.02-2260-1466	교통지도-8391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중구청(02-2260-1466) (2005-12-204299)	교통지도-4856(05.12)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중구청(02-2260-1466) (2006-01-107926)	교통지도-6963(06.01)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 59451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17066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서울지방법원 판사 정용상	사건98카단4546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8카단3533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청량리경찰서	교통과-28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청량리경찰서	교통과-2978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497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513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6349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2100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3876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11652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554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598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위67232-886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환경과-10626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환경과-21358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환경과-295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6888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7317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3154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67100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일괄압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2583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26157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8764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일괄압류)
513	서울85두1099	봉고	(주)엠아이케이텍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일괄압류)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환67100-342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환67100-4334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획경영국 기업환경과	기업환경과-25369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획경영국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21517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획경영국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2163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복지국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24931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2490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6968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7997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9126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9204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99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세무2과-2573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서울특별시청(3707-8684)	교단91120-3117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초구청 교통운수과 검사팀	교운 91180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초구청 세무2과	세무2과-1065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서초구청교통운수과검사팀 ☎570-6601	교통-9118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성남 중원구청장	건설91110-1827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성남시 수정구청장	건설91110-24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성동구교통지도과	교지91110-1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 신천동 7-19	지관1621-1333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교통관리과	교통91113-4195(98/7일괄)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민원봉사과(410-3158)	민원91150-540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2)	환경과-12181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 교통관리과	교통91113-2662(99.11일괄)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세무2과	13410-685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송파구청장 (민원봉사과)	민원 91150-11060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	교통63310-2474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	교통63310-417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63310-665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3412-4041)	교통63310-2938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3412-4041)	교통63310-27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수서경찰서(3412-4041)	교통63310-5398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앤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 261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수정구청장	건설91110-349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수정구청장	지경91110-1316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스카이캐피탈(주) *저당을무번호 : 4111-2002-004821	2,000,00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 교통과	교통91180-44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 환경보호과(031-310-2245)	환경보호과-5071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앤피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101)	환경정책과-14577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앤피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101)	환경정책과-31412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앤피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5977)	환경정책과-829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세무과(031-310-3070)	세무13410-2988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앤피	시흥시세정과(031-310-3501,3502)	시흥시청세정과-20548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시차량관리사업소[300000원]	차량관리-14812/100080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91180-33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청환경보호과(310-3103)	환경보호과-933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환경보호과	환경67087-165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환경보호과	환경67087-4561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시환경보호과(031-310-3102)	환경보호과-1154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차량관리사업소(031-310-5166,5168)	차량관리-58983/09032167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시흥차량관리사업소(031-310-5166,5168)	차량관리-58983/0903216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시흥차량등록사업소(310-2133)	차량91180-10696
498	경기89고3815	포터	김형일	안산경찰서	교통63310-980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경찰서:031-480-0114	경비교통과-2842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안산단원경찰서:031-480-0114	경비교통과-7741
495	91구7183	엑티언스포츠	(주)세종씨애플	안산단원경찰서:031-8040-0158	경비교통과-11891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단원경찰서:031-8040-0158	경비교통과-3318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 단원구청	세무과-19808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031-481-3545	세무과-1876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13932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1702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17020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031-481-6128	세무과-4406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단원구산업위생과[300000원]	산위-1472/0700175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산시단원구청	세무과-19808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15947/06006573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 동안구청 ☎380-4414	환경67100-1852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 동안구청(031-389-4414)	환경위생과-1957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 동안구청장(☎031-389-4296)	동안세무13410-10338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동안구청031-389-4411	동안환경67100-1446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동안구청031-389-4414	환경67100-2626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안양시만안구청031-463-4366~7	건교13621-2921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시민과	시민91153-3565/03-720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장(031-389-2248)	환경위생과-3912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청 시민과(389-2438,9)[300000원]	시민과-14247/05004609
516	경기35다3209	코란도	소보섭	안양시청 시민과[300000원]	시민과-246/0502375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 ☎02-2620-3717	교통행정과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 교통행정과(2650-3680)	교통9118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 세무2과(2650-3345~8)	세이1341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교통행정과(2650-3680)	교통91180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청지역교통과(71러2198대체)	지교91150-3-02-4566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구환경청소과(71러2198대체)	환경청소과-48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양천서경비교통과(2648-0032)	경교3310-1322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여주군청	환경보호과-18148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연수구청	교통행정과-41948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연수구청	세무과-1720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영등포구	교통지도과-1040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영등포구	교통지도과-18253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영등포구 ☎02-2670-3890	교통지도과-13612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2004-04-112350)	교통지도과-21535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2004-05-102061)	교지91113-21654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2004-06-111331)	교통지도과-21802
510	서울51가2491	그랜저	이종권	영등포구청 세무과	세무과-1015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영등포구청장	교지91113-1388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영월군	지경91113-2170
518	인천80머1692	포터	(주)청원건설	옹진군청재무과	재무과-2817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T.02-710-3485	교통지도과-1034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용인시 수지구청	산업환경과-28289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2634
517	경기65가4106	소나타	신현무	용인시 처인구청	세무과-653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원미구	경제교통과-15042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원미구청 (2004-06-112582)	원미구건설과-596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원미구청 건설과 T.032-650-2372	건설과-596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원주시청	교행91123-1128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현재	원주시청	교행91123-29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은평구청02)350-1486,1487	교지91115-0212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인천 계양구청	교행91100-672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인천 남구 세무1과	세무1과-18066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 남부경찰서 ☎032-468-5011	교통63340-206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세무과-557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	세무과-19914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세무과-1991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	환경보전과-1369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환경보전과-13698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	환경보전과-13707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 (032-509-6643)	환경위생과-4300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032-509-6643)	환경위생과-4300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2789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2789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행91153-140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행91153-80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46235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구청	세무과-21523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구청	세무과-5418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6393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강화경찰서(032-932-4972)	생활안전교통과-2590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인천계양구 (032-450-5684)	교행91100-2105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킹캡	정용철	인천계양구 (032-450-5684)	교행91100-2105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광역시 남구	교통민원-34281/09006699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광역시 남구	교통민원-34281/0900670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67100-454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8418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0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991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위67100-480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환위67100-79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13190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3768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3768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녹-882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환녹-882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과	환녹-8695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35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735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위-22315
514	87나1112	포터	박 혁	인천광역시 남구청	환경보전과-26956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환경보전과-26956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2004-04-101508)	교통91000-24007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남구청 (2004-04-106319)	교통91000-24007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2004-08-201466)	교통91000-1021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교통91000-325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20690/05008505
499	인천70다6589	타운너	김용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33894/06013743
499	인천70다6589	타운너	김용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33894/0601374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8591/0501654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교통과-8591/05016545
508	86서2321	정보타이타	김만석	인천광역시 동구청 ☎032-770-6872	교통과-30524
511	서울72도9811	그레이스	차금봉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교통과3025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보전과-3161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보전과-3161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보전과-1370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3923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84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환위67100-9861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509-6664)	환경위생과-1454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21939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05-11-105721)	교통행정과-722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위생과-793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광역시 중구청 ☎032-760-7396	환경위생과-18935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7	교통관리과-8607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8	교통관리과-13816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8	교통관리과-6971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032-440-6678	교통관리과-7616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교통행정과-25172
499	인천70다6589	타운너	김용철	인천광역시남구청장[10000원]	교통91180-5639/05002034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광역시남동구	주차관리과-1789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광역시서구청	교통민원과-56109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인천광역시중구	교통행정과-19507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인천광역시중구 ☎760-7565	교통행정과-36073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과-10390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광역시청(032-440-5992)	세정과-14806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광역시청(032-440-6678)	교통관리과-9138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광역시청(440-6246)	주차관리과-11064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남구청	교통민원과징-39303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세무13410-5619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세무과-28972
499	인천70다6589	타운너	김용철	인천남구청	환경녹지과-1246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환경녹지과-699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구청	환경위생과-3549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	환경위생과-35490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남구청(032-880-4204)	세무1과-15731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남구청(032-880-4204)	세무1과-4503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태용	인천남구청(032-880-4204)	세무1과-4503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205)	세무과-16472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20)	환경보전과-1127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20)	환경보전과-2283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20)	환경보전과-8905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구청(032-880-4345)	환경보전과-22748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구청(032-880-4348)	환위1580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032-880-4348)	환위15804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구청(880-4205)	세무과-25387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남동교통주차단속(032-453-2766)	교통과-14836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 세무과(453-2299)	세무과-21275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동구청교통과(032-453-2766)	교통-2947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남동구청교통과(453-2897)	교통과-22422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교통과(전화032-453-2755)	교통91180-4990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교통과[300000원]	교통과-10637/06000602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인천남동구청교통과[30000원]	교통과-44309/06005693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남동구청세무과(032-453-2298)	세무13410-3696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남부경찰서(032-861-0180)	경비교통과-00485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동부경찰서(032-762-0180)	경비교통과-5731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1069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394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4769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4886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5436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7165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구(509-6643)	환경위생과-37652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인천부평구(509-6643)	환경위생과-37652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인천부평구(509-6664)	환경위생과-17558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부평구:032-509-6740	교통행정과-57874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부평구:032-509-6746	교통행정과-53405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인천부평구청	주차관리과-7176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부평구청 ☎032-509-6304	세무과-21410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시 남구청 (2003-09-100151)	교통91000-37524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인천시 남구청 교통과	교통91000-3537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시 남구청 교통과	교통91000-631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인천시 남구청교통민원과	교통민원과-55690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 (☎ 819-3838)	차량91153-645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시교통관리과(032-440-6677)	교통관리과-7628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시남구청장[300000원]	교통과-35908/05006334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인천시남구청장[300000원]	교통과-6380/05008079
488	경기89가3126	와이드봉고강캡	정용철	인천시남동구청	교통91110-13337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시남동구청	환경위생과-12407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시부평구청	교통행정과-19119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시부평구청	지교91110-2403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시부평구청	지교91110-793
515	인천78가1676	스타렉스	신귀현	인천시서구청	교통민원과-38743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시연수구:032-433-0112	교통행정과-35877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시연수구:032-810-7953	교통행정과-24755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인천시청	교통관리과-13564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인천시청	교통관리과-7602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인천연수구:032-810-7953	교통행정과-44128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중구청	교행91000-6440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대용	인천중구청	세무과-13005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대용	인천중구청[300000원]	교행1057/08004610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대용	인천중구청[600000원]	교행1057/08004609
519	02무6244	엑센트	문용득	인천중구청교통행정과(0327607568)	교통행정과-29821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 t.032-762-4232	교통63310-3646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 T.881-4232	교통63310-7344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032)773-0013	교통63310-99
512	인천30라6196	소나타	박대용	인천중부경찰서(032-433-0112)	경비교통과-5293
505	인천3노8586	갤로퍼	서진국	인천중부경찰서(032-770-0113)	경비교통과-9214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카단 5141
500	인천7로3353	포터	남광용	인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14302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인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16658
502	인천2고2245	엘란트라	조정근	인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292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일산구산업교통과(전화:031-900-6297)	산업91000-15394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일산구청징수과	징수13410-2929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일산구청환경위생과(☎-900-6243)	환경67100-2514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정읍시장	교관91000-1820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프	종로구청	교지1621-2486
487	서울54마4260	레간자	박헌재	종로구청 교통지도과	교지13621-5909(9905)

506	경기87나1513	베스타	(주)동성테크	중구청 교통지도과	교지91123-12125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중랑구	교통행정과-50117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중랑구청	교통행정과-16308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508	86서2321	점보타이타	김만석	중랑구청 세무2과	세무2과-12241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경찰서경비교통과	교통63310-4360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경찰서장	교통63310-10860
491	54마1810	아반떼	이순옥	천안시	교통과-10241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	환경위생과-33618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07007467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03-5190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천안시청	환경위생과-19784
501	86라3384	포터	이창배	청주시흥덕구 경제사회과 T.043-269-8367	경제사회과-6074
487	서울54마4260	레간차	박헌재	춘천시	교통91150-4025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환경국 환경과	환경과-18742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환경국 환경과	환경과-34965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사회환경국 환경과	환경과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사회환경국 환경과	환경과-2197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사회환경국 환경과	환경과-31481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0482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9275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3104
507	충남7포3411	포터	변준구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5678
509	인천32머7368	카니발	이영진	한국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	도로영업팀-645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1118-2002-006051	1,900,000
499	인천70다6589	타우너	김용철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2801-1999-203698	8,040,000
496	경기38나8342	소나타3	양계원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11-2001-016910	3,000,000
485	경기40모2785	라노스	장규순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05-2004-010832	4,000,000
486	80소1142	와이드봉고킹캡	(주)도초산업개발	화성시동부출장소 ☎031-369-4801	건설산업과-2738
503	경기83러4221	와이드봉고	윤성철	환경위생과(032-650-2377)()	원미구환경위생과-8564
504	서울81모8380	그레이스	(주)부경이앤씨	LG카드(주) *저당을부번호 : 1114-2002-004663	20,000,0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96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공고

우리 구 『도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구획정리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 공고를 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 12.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도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내역

구 분	종전토지 지적공부(폐쇄)			확정토지 지적공부(시행)		
	필지수	면적(m ²)	비고	필지수	면적(m ²)	비고
도립동	536	155,327	“필지내역별첨”	338	155,240.7	“필지내역별첨”

4. 지적공부 확정 현황

- 토지대장 : 338필지(155,240.7m²)
- 지 적 도 : 12도곽(축척 1/500)
- 경계점좌표등록부 : 338필지

5. 시 행 일 : 2010. 12. 30.

6. 공고기간 : 2010. 12. 30. ~ 2011. 1. 14.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032)453-246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699호

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중개의 제한 등)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영업전부정지(6월)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공고합니다.

2011. 1. 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영업정지

2. 공고대상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영업장)	처 분 사유
인천 남동구 2010-10	2010.2.4	국민정보 대부중개	이○○	남동구 구월동 23 현대힐스테이트@1213동1304호	중개수수료 수취
인천 남동구 2010-18	2009.9.24	론앤론파트너스 대부중개	조○○	남동구 구월동 1133-10 로템프라자 301호	“

3. 공 고 기 간 : 2011. 1. 5 ~ 2011. 1.25

4. 영업정지 일자 : 2011. 1. 5

5. 처분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2의제2항(중개의 제한 등) 위반 영업전부정지(6개월) 사유에 해당 됨

6.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7.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영업전부정지(6개월)

8. 처분에 대한 불복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032-453-2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705호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구제역방역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9호) [별표3] 5.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출입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10. 12.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구제역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 사항 -

조치목적	이동제한 지역	대상 가축	사육두수	이동제한 기간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구월동 778	대상 농장에서 사육중인 우제류 전두수	한우 16두	~'11.01.06.
	구월동 778		한우 10두	~'11.01.06.
	구월동 778		한우 2두	~'11.01.06.
	수산동 284		육우 3두	~'11.01.10.
	운연동 306-2		한우 44두	~'11.01.10.

※ 농장주 주의 사항

- 사육중인 우제류에 대한 예찰 강화, 출입자 통제 및 축사 소독 철저
- 본 이동제한 명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7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림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림2지구 소3-2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는 경우 남동구청 도시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용재결과 관련된 서류는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도림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L= 447m, B= 6M
· 소3-1호선(L:48m B:6m) · 소3-2호선(L:399m B:6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37-7번지일원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0.12.31. ~ 2011. 1.13.
6.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453-2972)
7. 사업자 제시액 조서 : “불임참조”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

사업명 : 도림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제일감정	중앙감정	경일감정			
1	도림동	430-7	전	전	334	334	138,944,000	135,938,000	139,946,000	138,276,000	배재완	인천원예농협
	소계									138,276,000		
2	도림동	430-9	전	전	25	25	10,400,000	10,175,000	10,475,000	10,350,000	배재완	인천원예농협
	소계									10,350,000		
	계				359	359				148,626,000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물건)

사업명 : 도림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수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제일감정	중앙감정	경일감정			
1	도림동	430-7	비닐하우스	6.0X62.2	57.94 m ²	2,094,000	2,050,000	2170000	2,104,670	배재완	
2	도림동	430-7	비닐하우스	6.0X62.2	54.58 m ²	1,987,000	1,950,000	2060000	1,999,000		
3	도림동	430-7	비닐하우스	6.0X55.0	44.10 m ²	1,651,000	1,610,000	1700000	1,653,670		
4	도림동	430-7	비닐하우스	6.1X51.0	32.03 m ²	1,260,000	1,220,000	1290000	1,256,670		
5	도림동	430-7	비닐하우스	6.0X47.8	19.60 m ²	870,000	840,000	870000	860,000		
	소계								7,874,010		
6	도림동	430-9	비닐하우스	5.2X17.5	18.77 m ²	380,000	360,000	380000	373,340	배재완	
	소계								373,340		
7	도림동	430-7,-9	농업손실	2년간	359				957,810	배재완	
	소계								957,810		
	계								9,205,16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81호

2011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 구분지상권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I. 2011년도 건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① 용어 정의
- ② 적용 범위
- ③ 구분지상권의 시가표준액
- ④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산식
- ⑤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요령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30,796 중, 0.01% 인상)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0,156 중, -0.04 % 인하)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9 중, 6.25 %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220 중, 0.33%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1,612 중, 2.64 %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401 중, -0.30 % 인하)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21 중, 0.21 %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75 중)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중)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2,471 중)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하. 지하자원

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부과지역 : 남동구 전지역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남동출장소)

2010. 12.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관 련 법 규

□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전부개정] 신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세 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2.6]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83호

2011년도 예 산 고 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0. 12. 21)에
서 의결, 확정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11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2010년 당초예산액	증 감	%	비고
합 계		378,058,953	360,990,537	17,068,416	4.7	
일 반 회 계		343,037,144	331,462,207	11,574,937	3.5	
특 별 회 계		35,021,809	29,528,330	5,493,479	18.6	
	의료급여기금	817,060	605,251	211,809	35.0	
	폐기물처리 시 설 설 치	15,761,112	5,647,568	10,113,544	179.1	
	지하수 관리	49,397	52,900	△3,503	△6.6	
	주 차 장	10,827,000	9,518,112	1,308,888	13.8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1,601,633	2,104,161	△502,528	△23.9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703,364	4,691,947	△988,583	△21.1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110,147	6,727,844	△4,617,697	△68.6	
기 반 시 설		152,096	180,547	△28,451	△15.8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2010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43,037,144	100	331,462,207	100	11,574,937	3.5
세 입	지방세수입	91,932,136	26.8	52,244,859	15.8	39,687,277	76.0
	세 외 수 입	50,663,647	14.8	70,265,506	21.2	△19,601,859	△27.9
	경상적세외수입	26,456,612	7.7	26,786,181	8.1	△329,569	△1.2
	임시적세외수입	24,207,035	7.1	43,479,325	13.1	△19,272,290	△44.3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39,156,000	11.4	59,855,081	18.1	△20,699,081	△34.6
	보 조 금	161,285,361	47.0	149,096,761	45.0	12,188,600	8.2
	국고보조금등	103,753,141	30.2	93,145,835	28.1	10,607,306	11.4
	시도비보조금등	57,532,220	16.8	55,950,926	16.9	1,581,294	2.8
	지 방 채	0	0.0	0	0.0	0	0.0
	국내차입금	0	0.0	0	0.0	0	0.0
세 출	인 건 비	45,824,438	13.4	43,512,341	13.1	2,312,097	5.3
	물 건 비	21,164,824	6.2	18,728,491	5.7	2,436,333	13.0
	경 상 이 전	201,809,297	58.8	175,849,949	53.1	25,959,348	14.8
	자 본 지 출	63,100,382	18.4	76,675,413	23.1	△13,575,031	△17.7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 전 재 원	250,000	0.1	250,000	0.1	0	0.0
	내 부 거 래	3,256,479	0.9	1,391,783	0.4	1,864,696	134.0
	예비비및기타	7,631,724	2.2	15,054,230	4.5	△7,422,506	△49.3

나.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2010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43,037,144	100	331,462,207	100	11,574,937	3.5
기 능 별	일반공공행정	36,230,114	10.6	41,236,314	12.4	△5,006,200	△12.1
	공공질서및안전	1,645,755	0.5	1,201,292	0.4	444,463	37.0
	교 육	8,136,342	2.4	1,749,262	0.5	6,387,080	365.1
	문화및관광	5,900,661	1.7	5,938,619	1.8	△37,958	△0.6
	환경보호	16,845,074	4.9	14,246,310	4.3	2,598,764	18.2
	사회복지	163,009,178	47.5	139,930,303	42.2	23,078,875	16.5
	보 건	12,005,469	3.5	6,396,968	1.9	5,608,501	87.7
	농림해양수산	3,872,074	1.1	3,776,307	1.1	95,767	2.5
	산업.중소기업	3,260,172	1.0	6,046,574	1.8	△2,786,402	△46.1
	수송및교통	12,516,967	3.6	18,672,208	5.6	△6,155,241	△33.0
	국토및지역개발	19,633,280	5.7	27,549,377	8.3	△7,916,097	△28.7
	예 비 비	4,631,724	1.4	12,054,230	3.6	△7,422,506	△61.6
	기 타	55,350,334	16.1	52,664,443	15.9	2,685,891	5.1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2010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5,021,809	100	29,528,330	100	5,493,479	18.6
세 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 외 수 입	33,683,149	96.2	27,475,567	93.0	6,207,582	22.6
	경상적세외수입	3,969,301	11.3	4,755,811	16.1	△786,510	△16.5
	임시적세외수입	29,713,848	84.8	22,719,756	76.9	6,994,092	30.8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 조 금	1,338,660	3.8	2,052,763	7.0	△714,103	△34.8
	국고보조금등	596,400	1.7	422,473	1.4	173,927	41.2
	시도비보조금등	742,260	2.1	1,630,290	5.5	△888,030	△54.5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2010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5,021,809	100	29,528,330	100	5,493,479	18.6
성 질 별	인 건 비	814,451	2.3	675,154	2.3	139,297	20.6
	물 건 비	759,538	2.2	689,777	2.3	69,761	10.1
	경상이전	760,459	2.2	562,920	1.9	197,539	35.1
	자본지출	7,331,445	20.9	18,860,149	63.9	△11,528,704	△61.1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전재원	0	0.0	0	0.0	0	0.0
	내부거래	0	0.0	0	0.0	0	0.0
	예비비및기타	25,355,916	72.4	8,740,330	29.6	16,615,586	190.1
기 능 별	환경보호	15,761,112	45.0	5,647,568	19.1	10,113,544	179.1
	사회복지	788,560	2.3	577,664	2.0	210,896	36.5
	수송및교통	10,538,908	30.1	9,223,643	31.2	1,315,265	14.3
	국토및지역개발	7,616,637	21.7	13,757,399	46.6	△6,140,762	△44.6
	기 타	316,592	0.9	322,056	1.1	△5,464	△1.7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84호

2010년도 예 산 고 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0. 12. 21)에서 의결, 확정된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10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395,053,580	410,320,743	△15,267,163	△3.7	
일 반 회 계		355,885,194	370,399,398	△14,514,204	△3.9	
특 별 회 계		39,168,386	39,921,345	△752,959	△1.9	
	의료급여기금	649,577	624,394	25,183	4.0	
	폐기물처리 시 설 설 치	5,751,706	5,751,706	0	0.0	
	지하수 관리	52,900	52,900	0	0.0	
	주 차 장	15,142,957	15,017,475	125,482	0.8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139,967	2,139,967	0	0.0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7,857,831	7,642,855	214,976	2.8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7,315,595	8,453,678	△1,138,083	△13.5	
	기 반 시 설	257,853	238,370	19,483	8.2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55,885,194	100	370,399,398	100	△14,514,204	△3.9
세 입	지방세수입	50,886,859	14.3	52,244,859	14.1	△1,358,000	△2.6
	세 외 수 입	83,341,257	23.4	84,134,883	22.7	△793,626	△0.9
	경상적세외수입	23,061,712	6.5	25,666,308	6.9	△2,604,596	△10.1
	임시적세외수입	60,279,545	16.9	58,468,575	15.8	1,810,970	3.1
	지방교부세	5,360,065	1.5	4,060,065	1.1	1,300,000	32.0
	조정교부금	52,120,640	14.6	66,272,643	17.9	△14,152,003	△21.4
	보 조 금	164,176,373	46.1	163,686,948	44.2	489,425	0.3
	국고보조금등	105,748,369	29.7	103,734,499	28.0	2,013,870	1.9
	시도비보조금등	58,428,004	16.4	59,952,449	16.2	△1,524,445	△2.5
	지 방 채	0	0.0	0	0.0	0	0.0
	국내차입금	0	0.0	0	0.0	0	0.0
세 출	인 건 비	43,686,847	12.3	44,278,147	12.0	△591,300	△1.3
	물 건 비	19,353,542	5.4	19,865,207	5.4	△511,665	△2.6
	경 상 이 전	181,497,246	51.0	184,432,268	49.8	△2,935,022	△1.6
	자 본 지 출	97,752,755	27.5	96,916,965	26.2	835,790	0.9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 전 재 원	250,000	0.1	250,000	0.1	0	0.0
	내 부 거 래	2,891,783	0.8	2,891,783	0.8	0	0.0
	예비비및기타	10,453,021	2.9	21,765,028	5.9	△11,312,007	△52.0

나.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55,885,194	100	370,399,398	100	△14,514,204	△3.9
기 능 별	일반공공행정	40,774,763	11.5	43,334,005	11.7	△2,559,242	△5.9
	공공질서및안전	1,720,138	0.5	1,422,423	0.4	297,715	20.9
	교 육	1,694,003	0.5	1,749,355	0.5	△55,352	△3.2
	문화및관광	9,339,168	2.6	9,817,703	2.7	△478,535	△4.9
	환경보호	14,795,471	4.2	14,964,934	4.0	△169,463	△1.1
	사회복지	154,831,577	43.5	155,401,971	42.0	△570,394	△0.4
	보 건	6,640,755	1.9	6,581,274	1.8	59,481	0.9
	농림해양수산	3,701,018	1.0	3,752,195	1.0	△51,177	△1.4
	산업.중소기업	5,908,313	1.7	5,953,937	1.6	△45,624	△0.8
	수송및교통	24,317,512	6.8	24,572,897	6.6	△255,385	△1.0
	국토및지역개발	33,661,542	9.5	32,490,782	8.8	1,170,760	3.6
	예 비 비	6,302,364	1.8	17,614,371	4.8	△11,312,007	△64.2
	기 타	52,198,570	14.7	52,743,551	14.2	△544,981	△1.0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9,168,386	100	39,921,345	100	△752,959	△1.9
세 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 외 수 입	38,392,674	98.0	39,145,633	98.1	△752,959	△1.9
	경상적세외수입	7,020,789	17.9	7,815,331	19.6	△794,542	△10.2
	임시적세외수입	31,371,885	80.1	31,330,302	78.5	41,583	0.1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 조 금	775,712	2.0	775,712	1.9	0	0.0
	국고보조금등	430,481	1.1	430,481	1.1	0	0.0
	시도비보조금등	345,231	0.9	345,231	0.9	0	0.0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9,168,386	100	39,921,345	100	△752,959	△1.9
성 질 별	인 건 비	711,882	1.8	711,882	1.8	0	0.0
	물 건 비	759,475	1.9	818,965	2.1	△59,490	△7.3
	경상이전	592,420	1.5	592,420	1.5	0	0.0
	자본지출	20,752,825	53.0	22,482,542	56.3	△1,729,717	△7.7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전재원	0	0.0	0	0.0	0	0.0
	내부거래	0	0.0	0	0.0	0	0.0
	예비비및기타	16,351,784	41.7	15,315,536	38.4	1,036,248	6.8
기 능 별	환경보호	5,751,706	14.7	5,751,706	14.4	0	0.0
	사회복지	621,990	1.6	596,807	1.5	25,183	4.2
	수송및교통	14,859,648	37.9	14,734,166	36.9	125,482	0.9
	국토및지역개발	17,624,146	45.0	18,527,770	46.4	△903,624	△4.9
	기 타	310,896	0.8	310,896	0.8	0	0.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85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의 예정지적좌표측량에 따라 신설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별		첨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측 량 연 월 일	2010년 10월 22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 설				

지 적 기 준 점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환선수치(중부)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1	지적도근점	4165	433218.68	175471.30	2010.10.22	표철	논현동	
2	지적도근점	4166	433212.62	175522.82	2010.10.22	표철	논현동	
3	지적도근점	4167	433073.47	175613.03	2010.10.22	표철	논현동	
4	지적도근점	4168	433016.64	175716.24	2010.10.22	표철	논현동	
5	지적도근점	4169	432924.42	175772.19	2010.10.22	표철	논현동	
6	지적도근점	4170	432979.64	175837.86	2010.10.22	표철	논현동	
7	지적도근점	4171	433088.67	175938.32	2010.10.22	표철	논현동	
8	지적도근점	4172	433190.27	176028.26	2010.10.22	표철	논현동	
9	지적도근점	4173	433300.33	176083.08	2010.10.22	표철	논현동	
10	지적도근점	4174	433274.09	176239.59	2010.10.22	표철	논현동	
11	지적도근점	4175	433228.08	176245.94	2010.10.22	표철	논현동	
12	지적도근점	4176	433117.92	176394.45	2010.10.22	표철	논현동	
13	지적도근점	4177	432997.97	176528.26	2010.10.22	표철	논현동	
14	지적도근점	4178	432912.34	176479.23	2010.10.22	표철	논현동	
15	지적도근점	4179	432900.24	176443.33	2010.10.22	표철	논현동	
16	지적도근점	4180	432776.40	176559.10	2010.10.22	표철	논현동	
17	지적도근점	4181	432597.48	176412.04	2010.10.22	표철	논현동	
18	지적도근점	4182	432471.50	176306.92	2010.10.22	표철	논현동	

19	지적도근점	4183	432320.98	176190.12	2010.10.22	표철	논현동	
20	지적도근점	4184	432125.88	176039.25	2010.10.22	표철	논현동	
21	지적도근점	4185	431664.65	175662.27	2010.10.22	표철	논현동	
22	지적도근점	4186	431925.31	175881.06	2010.10.22	표철	논현동	
23	지적도근점	4187	431390.07	175435.61	2010.10.22	표철	논현동	
24	지적도근점	4188	431194.49	175226.73	2010.10.22	표철	논현동	
25	지적도근점	4189	431164.35	174907.56	2010.10.22	표철	논현동	
26	지적도근점	4190	431220.80	174750.52	2010.10.22	표철	논현동	
27	지적도근점	4191	431294.45	174629.80	2010.10.22	표철	논현동	
28	지적도근점	4192	431288.43	174540.54	2010.10.22	표철	논현동	
29	지적도근점	4193	431285.62	174283.70	2010.10.22	표철	고잔동	
30	지적도근점	4194	431302.18	174103.73	2010.10.22	표철	고잔동	
31	지적도근점	4195	431359.26	173926.19	2010.10.22	표철	고잔동	
32	지적도근점	4196	431423.99	174073.88	2010.10.22	표석	고잔동	
33	지적도근점	4197	431442.36	174318.12	2010.10.22	표철	고잔동	
34	지적도근점	4198	431535.47	174340.22	2010.10.22	표철	고잔동	
35	지적도근점	4199	431623.77	174344.83	2010.10.22	표철	고잔동	
36	지적도근점	4200	431619.03	174404.92	2010.10.22	표철	논현동	
37	지적도근점	4201	431604.67	174494.08	2010.10.22	표철	논현동	
38	지적도근점	4202	431574.97	174615.50	2010.10.22	표철	논현동	
39	지적도근점	4203	431575.11	174712.48	2010.10.22	표철	논현동	
40	지적도근점	4204	431556.57	174825.83	2010.10.22	표철	논현동	

41	지적도근점	4205	431598.81	174769.31	2010.10.22	철재	논현동	
42	지적도근점	4206	431578.96	174810.90	2010.10.22	철재	논현동	
43	지적도근점	4207	431635.19	174861.55	2010.10.22	철재	논현동	
44	지적도근점	4208	431688.02	174872.41	2010.10.22	철재	논현동	
45	지적도근점	4209	431774.74	174900.94	2010.10.22	철재	논현동	
46	지적도근점	4210	431874.84	174953.28	2010.10.22	표철	논현동	
47	지적도근점	4211	431966.25	175038.58	2010.10.22	표철	논현동	
48	지적도근점	4212	432080.54	175126.69	2010.10.22	표철	논현동	
49	지적도근점	4213	432220.19	175160.12	2010.10.22	표철	논현동	
50	지적도근점	4214	432270.49	175204.77	2010.10.22	표철	논현동	
51	지적도근점	4215	432335.98	175174.62	2010.10.22	표철	논현동	
52	지적도근점	4216	432323.50	175232.22	2010.10.22	철재	논현동	
53	지적도근점	4217	432436.28	175133.14	2010.10.22	표철	논현동	
54	지적도근점	4218	432480.52	175026.43	2010.10.22	표철	논현동	
55	지적도근점	4219	432446.31	174934.24	2010.10.22	표철	논현동	
56	지적도근점	4220	432532.70	174883.48	2010.10.22	표철	논현동	
57	지적도근점	4221	432586.66	174906.09	2010.10.22	표철	논현동	
58	지적도근점	4222	432621.54	174923.70	2010.10.22	표철	논현동	
59	지적도근점	4223	432674.37	174950.24	2010.10.22	표철	논현동	
60	지적도근점	4224	432709.54	174904.82	2010.10.22	표철	논현동	
61	지적도근점	4225	432796.35	174837.16	2010.10.22	표철	논현동	
62	지적도근점	4226	432841.61	174799.55	2010.10.22	표철	논현동	

63	지적도근점	4227	432730.08	174705.28	2010.10.22	표철	고잔동	
64	지적도근점	4228	432877.23	174807.68	2010.10.22	표철	고잔동	
65	지적도근점	4229	432853.94	174962.77	2010.10.22	철재	논현동	
66	지적도근점	4230	432898.13	175003.71	2010.10.22	철재	논현동	
67	지적도근점	4231	432915.08	175044.12	2010.10.22	철재	논현동	
68	지적도근점	4232	432921.90	175100.80	2010.10.22	철재	논현동	
69	지적도근점	4233	432884.40	175122.72	2010.10.22	철재	논현동	
70	지적도근점	4234	432840.46	175150.48	2010.10.22	철재	논현동	
71	지적도근점	4235	432820.85	175164.11	2010.10.22	철재	논현동	
72	지적도근점	4236	432794.69	175210.55	2010.10.22	표철	논현동	
73	지적도근점	4237	432823.00	175315.77	2010.10.22	표철	논현동	
74	지적도근점	4238	432950.87	175289.10	2010.10.22	표철	논현동	
75	지적도근점	4239	432983.69	175440.64	2010.10.22	표철	논현동	
76	지적도근점	4240	433086.83	175415.24	2010.10.22	표철	논현동	
77	지적도근점	4241	433150.17	175402.89	2010.10.22	표철	논현동	
78	지적도근점	4242	433143.55	175474.58	2010.10.22	표철	논현동	
79	지적도근점	4243	433120.84	175515.65	2010.10.22	표철	논현동	
80	지적도근점	4244	433057.32	175536.30	2010.10.22	표철	논현동	
81	지적도근점	4245	433018.35	175577.43	2010.10.22	표철	논현동	
82	지적도근점	4246	432823.88	175894.06	2010.10.22	표철	논현동	
83	지적도근점	4247	432989.66	176402.58	2010.10.22	표철	논현동	
84	지적도근점	4248	432952.44	176356.71	2010.10.22	표철	논현동	

85	지적도근점	4249	433023.22	176300.42	2010.10.22	표철	논현동	
86	지적도근점	4250	433150.72	176141.13	2010.10.22	표철	논현동	
87	지적도근점	4251	433005.32	176012.73	2010.10.22	표철	논현동	
88	지적도근점	4252	432756.61	176000.67	2010.10.22	표철	논현동	
89	지적도근점	4253	432684.35	176082.39	2010.10.22	표철	논현동	
90	지적도근점	4254	432588.00	176191.52	2010.10.22	표철	논현동	
91	지적도근점	4255	433005.79	175541.63	2010.10.22	표철	논현동	
92	지적도근점	4256	432984.15	175491.56	2010.10.22	표철	논현동	
93	지적도근점	4257	432882.59	175743.02	2010.10.22	표철	논현동	
94	지적도근점	4258	432844.85	175707.49	2010.10.22	표철	논현동	
95	지적도근점	4259	432924.48	175632.85	2010.10.22	표철	논현동	
96	지적도근점	4260	432955.29	175662.00	2010.10.22	표철	논현동	
97	지적도근점	4261	432777.79	175805.04	2010.10.22	표철	논현동	
98	지적도근점	4262	432642.54	175721.39	2010.10.22	표철	논현동	
99	지적도근점	4263	432524.42	175577.10	2010.10.22	표철	논현동	
100	지적도근점	4264	432479.88	175900.78	2010.10.22	표철	논현동	
101	지적도근점	4265	432331.16	175789.16	2010.10.22	표철	논현동	
102	지적도근점	4266	432756.83	175325.99	2010.10.22	표철	논현동	
103	지적도근점	4267	432649.39	175458.52	2010.10.22	표철	논현동	
104	지적도근점	4268	432586.74	175500.95	2010.10.22	표철	논현동	
105	지적도근점	4269	432411.59	175517.20	2010.10.22	표철	논현동	
106	지적도근점	4270	432318.69	175435.10	2010.10.22	표철	논현동	

107	지적도근점	4271	432375.51	175369.50	2010.10.22	표철	논현동	
108	지적도근점	4272	432524.35	175347.80	2010.10.22	표철	논현동	
109	지적도근점	4273	432417.22	175720.43	2010.10.22	표철	논현동	
110	지적도근점	4274	432276.92	175878.98	2010.10.22	표철	논현동	
111	지적도근점	4275	432249.69	175697.15	2010.10.22	표철	논현동	
112	지적도근점	4276	432205.49	175707.26	2010.10.22	표철	논현동	
113	지적도근점	4277	432285.80	175790.65	2010.10.22	표철	논현동	
114	지적도근점	4278	432262.03	175817.55	2010.10.22	표철	논현동	
115	지적도근점	4279	432174.97	175751.52	2010.10.22	표철	논현동	
116	지적도근점	4280	432123.36	175699.30	2010.10.22	표철	논현동	
117	지적도근점	4281	432149.92	175665.26	2010.10.22	표철	논현동	
118	지적도근점	4282	432187.31	175645.91	2010.10.22	표철	논현동	
119	지적도근점	4283	432157.89	175619.29	2010.10.22	표철	논현동	
120	지적도근점	4284	432185.82	175579.86	2010.10.22	표철	논현동	
121	지적도근점	4285	432222.94	175537.87	2010.10.22	표철	논현동	
122	지적도근점	4286	432113.26	175450.28	2010.10.22	표철	논현동	
123	지적도근점	4287	432023.69	175363.11	2010.10.22	표철	논현동	
124	지적도근점	4288	431989.00	175402.62	2010.10.22	표철	논현동	
125	지적도근점	4289	432086.43	175480.69	2010.10.22	표철	논현동	
126	지적도근점	4290	432046.78	175537.67	2010.10.22	표철	논현동	
127	지적도근점	4291	431946.98	175433.17	2010.10.22	표철	논현동	
128	지적도근점	4292	431855.32	175351.54	2010.10.22	표철	논현동	

129	지적도근점	4293	431898.11	175054.85	2010.10.22	표철	논현동	
130	지적도근점	4294	431983.24	175138.68	2010.10.22	표철	논현동	
131	지적도근점	4295	432104.78	175246.03	2010.10.22	표철	논현동	
132	지적도근점	4296	432228.83	175355.68	2010.10.22	표철	논현동	
133	지적도근점	4297	431659.07	175582.65	2010.10.22	표철	논현동	
134	지적도근점	4298	431739.81	175491.35	2010.10.22	표철	논현동	
135	지적도근점	4299	431535.07	175472.73	2010.10.22	표철	논현동	
136	지적도근점	4300	431424.65	175355.70	2010.10.22	표철	논현동	
137	지적도근점	4301	431740.56	175250.64	2010.10.22	표철	논현동	
138	지적도근점	4302	431633.24	175155.36	2010.10.22	표철	논현동	
139	지적도근점	4303	431547.31	175232.66	2010.10.22	표철	논현동	
140	지적도근점	4304	431352.25	175250.10	2010.10.22	표철	논현동	
141	지적도근점	4305	431356.37	175137.71	2010.10.22	표철	논현동	
142	지적도근점	4306	431382.53	175008.24	2010.10.22	표철	논현동	
143	지적도근점	4307	431417.60	174851.19	2010.10.22	표철	논현동	
144	지적도근점	4308	431475.22	174812.56	2010.10.22	표철	논현동	
145	지적도근점	4309	431568.09	175086.61	2010.10.22	표철	논현동	
146	지적도근점	4310	431548.43	175003.52	2010.10.22	표철	논현동	
147	지적도근점	4311	431531.91	174922.90	2010.10.22	표철	논현동	
148	지적도근점	4312	432626.14	174987.63	2010.10.22	표철	논현동	
149	지적도근점	4313	432571.82	175029.67	2010.10.22	표철	논현동	
150	지적도근점	4314	432607.54	175068.47	2010.10.22	표철	논현동	

151	지적도근점	4315	432656.93	175033.76	2010.10.22	표석	논현동	
152	지적도근점	4316	432684.51	175018.84	2010.10.22	표석	논현동	
153	지적도근점	4317	431841.54	174259.64	2010.10.22	표철	고잔동	
154	지적도근점	4318	431775.36	174226.23	2010.10.22	표철	고잔동	
155	지적도근점	4319	431749.95	174180.91	2010.10.22	표철	고잔동	
156	지적도근점	4320	431728.29	174127.53	2010.10.22	표철	고잔동	
157	지적도근점	4321	431725.60	174063.27	2010.10.22	표철	고잔동	
158	지적도근점	4322	431758.47	173938.61	2010.10.22	표철	고잔동	
159	지적도근점	4323	431762.92	173889.00	2010.10.22	표철	고잔동	